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3224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요 약

가. 총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필리핀 FTA”라고 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필리핀공화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1) 추진 경과 및 비준 동향

우리 정부는 2019년 6월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제1차 협상 이후 총 5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 선언되었음.

이후 협정문 번역 등 국내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식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필리핀측의 경우, 2024년 9월 상원에서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되어 발효를 위한 필리핀측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임.

한-필리핀 FTA는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토록 규정¹⁾되어있는바, 우리 정부는 정확한 발효 일자는 양국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정부의 비준동의 추진 사유

정부는 한-필리핀 FTA 추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정부는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캄보디아('22년 발효), 인도네시아('23년 1월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필리핀과 양자 FTA를 체결하여 아시안 지역 내 시장접근을 한층 공고화하였음.

정부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필리핀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함.

아울러 백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제·기

1) 협정문 제12.5조

술협력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기술지원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필리핀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특히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심각성 및 상호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생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인력·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협력 사항에 합의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나. 상품 양허결과

한-필리핀 FTA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²⁾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기존의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수 기준 (한) 89.9% - (필) 76.5%, 수입액 기준 (한) 87.0% - (필) 84.7%의 자유화율이 달성된 바 있음.

동 한-필리핀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3.6%p, 수입액 기준 9.8%p(3.6억불)를 추가 개방하고, 필리핀 측은 품목수 기준 18.5%p, 수입액 기준 12.9%p(8.4억불)를 추가 개방함. 이에, 품목수 기준 (한) 93.5% - (필) 94.9%, 수입액 기준 (한) 96.8% - (필) 97.6%의 자유화율을 달성함.

아울러 2022년 2월 기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양허수준을 포함하면, 양국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한) 94.8% -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 (필) 97.6%를 달성하였음.

2) 2007년 6월 발효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결과

한-필리핀 FTA를 통해 우리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483개(49백만불) 공산품 중 328개(37백만불)에 대해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1,648개(945백만불) 공산품 중 1,446개(799백만불)에 대해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특히 우리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즉시 철폐 및 5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함.

2) 농산물 양허결과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농산물 분야 개방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쌀 및 관련 제품과 식량작물, 축산물, 주요 과실류는 양허제외하였음. 바나나는 5년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³⁾를 확보함.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대비 492개(26백만불)를 추가로 관세철폐하였음.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커피조제품, 대두, 곡분류 등은 즉시철폐, 인삼류, 고추, 배, 된장, 소주 등은 15년 이내 철폐하기로 함.

3)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

3) 수산물 양허결과

우리는 한-아세안 FTA 대비 정어리통조림, 굴(조제·저장) 등 24개 품목(356만불)을 추가로 관세 철폐함. 우리 주요 생산 어종 또는 對필리핀 수입액이 높은 전복(조제·저장), 새우(냉동), 문어(조제·저장) 등 92개 품목은 양허제외함.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대비 132개(12백만불)를 추가로 관세 철폐하였음.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김, 가다랑어(냉동), 황다랑어(냉동) 등은 최대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다. 농수산물 분야 지원대책

1) 농산물 분야 한-필리핀 FTA 영향분석

한-필리핀 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⁴⁾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의 2023년 발효를 가정할 때, 향후 15년간 총 약 1,426억 원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농업생산의 감소는 바나나의 관세 양허에 따른 수입 증가로 대부분 과실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한-필리핀 FTA 경제적 영향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2022.11.

2) 수산물 분야 한-필리핀 FTA 영향분석

한-필리핀 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의 2023년 발효를 가정할 때, 국내 수산업 생산 피해 규모는 발효 후 15년간 총 1억 5,333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주로 소금과 어류 등에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산업 생산 감소는 연체동물이 연평균 522만 원으로 수산업 생산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3) 농수산물 정부대책 분석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5억 원 수준이며, 바나나 수입 증가로 인해 대부분 과실류에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과수·과채 등 원예산업에 대한 피해 대응을 위해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 1,469억 원의 투·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시설의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유통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함.

수산업 분야는 한-미/한-중 FTA 등에 비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별도의 국내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필요시 기존에 마련한 FTA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라. 원산지

1) 원산지 규범

공산품과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등 상당수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별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우리 민감성이 있는 육류·낙농품·곡물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 반면, 수출 잠재력이 있는 일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에 합의하였음.

또한,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품목도 추후 한-필리핀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에서는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고,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이행(발효 후 인증수출자 즉시, 수출자·생산자 10년내)하기로 함. 관세당국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순차적

으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에 정보를 서면 요청, 수출국에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경제 및 기술협력

한-필리핀 FTA 경제 및 기술협력 챕터에서는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본원칙, 협력의 범위, 형태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협력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양국은 보건·생명과학 산업, 혁신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영화, 지식재산, 표준 등의 분야에서 정보교환, 인적자원 훈련, 전문가 교류 및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 목적 및 예시적 활동을 규정하여 향후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인 팬데믹·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백신 및 기후변화에서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서의 상호공조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함.

바. 검토의견(총괄)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다섯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 수준에서 우위 확보가 예상됨.

상품 양허결과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였고, 자동차, 정밀화학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됨. 주요 민감 품목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10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음. 한편 농업 분야 생산액 감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바나나 수입증가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원예품목을 대상으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임.

한-필리핀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한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4
IV. 검토의견	5
제1장 총괄	5
제2장 상품 무역	30
제3장 무역구제	60
제4장 원산지 규정	87
제5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23
제6장 경쟁	132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147
제8장 투명성	167
제9장 분쟁해결	174
제10장 예외	197
제11장 제도적 장치	203
제12장 최종 규정	214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219
【참고자료 2】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221
【참고자료 3】 한-필리핀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 계획	22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정 부

2. 제안일자 : 2024년 8월 27일

3. 회부일자 : 2024년 8월 2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안 제1.1조).

나.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3.2조).

다. 각 당사국은 관세법과 규정이 관세영역에 일관되게 이행·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함(안 제5.4조 및 제5.5조).

라. 양 당사국은 상호이익을 기초한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하며,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2조 및 제7.5조).

마.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

바.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감독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1조).

Ⅲ. 참고사항

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다. 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첨 국내산업 보완대책 참고

라. 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마. 추진경위

- 2019. 6. 협상 개시
- 2019. 6. ~ 2020. 1. 제1차 ~ 제5차 협상
- 2021. 10. 26. 협상 최종 타결 선언
- 2023. 7. 18. 제29회 국무회의 심의
- 2023. 9. 7. 서명
- 2024. 8. 13. 제35회 국무회의 심의

IV. 검토의견

제1장 총괄

우리나라와 필리핀공화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상관계 확대·강화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이하 “한-필리핀 FTA”)」을 체결함.

총괄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개요’, ‘ 「통상조약법」 상 절차 이행 검토’, ‘주요내용 및 평가’,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함.

< 총괄부문 구성 >

세부 부문	주요 기술 내용
1. 개요	- 추진경과 - 국회 제출사유 - 한·필리핀 양국의 FTA 추진현황
2. 「통상조약법」 상 절차 이행 검토	- 「통상조약법」 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3. 주요내용 및 평가	- 상품 양허 주요내용 및 평가
4.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	- 양국간 교역현황 - 경제적 효과 분석 - 보완대책

1. 개 요

가. 추진경과

정부는 2019년 6월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9년 6월 제1차 협상 후 총 5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함. 이후 협정문 번역 등 국내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정식 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6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24년 8월 2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 재제출함.

< 한-필리핀 FTA 추진 경과 >

- (2019.4월) 한-필 수교 70주년 계기 한-필 통상장관 간 한-필리핀 FTA 추진 합의
- (2019.4~5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한-필리핀 FTA 체결계획」 국회 산자위 보고 등 국내절차 완료
- (2019.6월) 한-필 통상장관 간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9.6월~2020.1월) 제1~5차 공식협상 개최
 - * 1차(서울, '19.6.4~5), 2차(마닐라, '19.7.15~17), 3차(부산, '19.8.12~14), 4차(세부, '19.9.10~13), 5차(마닐라, '20.1.29~31)
- (2021.10월)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화상)
- (2023.9월) 아세안 정상회담 계기 한-필리핀 FTA 정식서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이 2012년 7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통상조약 협상 진행 전 과정은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필리핀 FTA는 통상조약법 시행 이후 협상이 개시되었는바, 동 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함.

한-필리핀 FTA는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동 협정이 발효되도록 규정⁵⁾되어 있는 바, 이에 정부는 정확한 발효 일자는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필리핀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한편, 한-필리핀 FTA 발효 및 이행을 위해서는 4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필리핀 FTA 이행법령>

구분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예규
발효 전	4(0)	-	2(0)	1(0)	1(0)
발효 후	0(0)	-	-	-	-

5) 협정문 제12.5조

<이행법령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소관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기획재정부(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한-필리핀 FTA 관세율 • 한-필리핀 FTA 관세율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등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현황 △입안 • 부처협의: 11월 △입법예고: 12월 △법제처 심사: 12월 △국무 • 차관회의: 2월 △공포완료: 2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한-필리핀 FTA 원산지 결정기준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원산지 조사 방법 • 조사결과 회신 기간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계획 △입안 • 부처협의: 11월 △입법예고: 12월 △법제처 심사: 12월 △공포완료: 2월
산업통상자원부(1)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필리핀 포함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의 1년 이상 경과시 조치 완화 국가에 필리핀 포함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계획 △입안 • 부처협의: 11월 △입법예고: 12월 △법제처 심사: 12월 △국무 • 차관회의: 2월 △공포완료 : 2월
관세청(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선적 후 발급 절차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절차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절차	- 개정기한 : 발효 전 - 추진계획 △법제처 등 심사 → 행정예고 → 시행

나. 정부의 비준 추진사유

정부는 한-필리핀 FTA 추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정부는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캄보디아('22년 발효), 인도네시아('23년 1월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필리핀과 양자 FTA를 체결하여 아시안 지역 내 시장접근을 한층 공고화하였음.

정부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필리핀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함.

아울러 백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제·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기술지원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필리핀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특히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심각성 및 상호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생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인력·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협력 사항에 합의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현재 한-미 FTA, 한-EU FTA, RCEP 등 21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등 4건의 협상이 타결 및 서명, 한-메르코수르 등 10건은 협상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2023년 12월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발효 (21건, 59개국)	칠레	발효('04.4.1)	'03.2.15 서명 '04.2.16 국회비준동의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5.8.4 서명 '05.12.1 국회비준동의	ASEAN 시장 교두보
	EFTA ¹⁾	발효('06.9.1)	'05.12.5 서명 '06.6.30 국회비준동의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²⁾	발효('07.6.1)	'07.6.1 상품 / '09.5.1 서비스 '09.9.1 투자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1.1)	'09.8.7 서명 '09.11.6 국회비준동의	BRICs국가, 거대시장
	EU	잠정 발효('11.7.1) 전체 발효('15.12.13)	'10.10.6 서명 '11.7.1 국회비준동의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발효('11.8.1)	'11.3.21 서명 '11.6.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개정 의정서 발효 ('19.1.1)	'07.6.30 서명 '10.12.3 추가협상타결 '18.9.24 개정의정서 서명 '18.12.7 국회비준동의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튀르키예	기본·상품협정발효('13.5.1)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18.8.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12.11 기본·상품 협정 국회비준 동의 '15.2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15.11.서·투협정 국회 비준 동의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14.4.8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15.1.1)	'14.9.22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15.6.1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15.12.20)	'15.3.23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15.12.20)	'15.5.5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콜롬비아	발효('16.7.15)	'13.2.21 서명 '14.4.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 5개국 ³⁾	온두라스('19.10.1) 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18.2.21 서명 '19.8.2 국회비준동의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발효('21.1.1)	'19.6.10 원칙적타결선언 '19.8.22 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⁴⁾	발효('22.2월)	'20.11.15 서명 '21.12.2 국회비준동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발효('22.12.1)	'21.5.12 서명 '22.9월 국회비준동의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발효('22.12.1)	'21.10.26 서명 '22.9월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발효('23.1.1)	'20.12.18 서명 '21.6월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서명	필리핀	서명('23.9월)	향후일정 협의중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UAE	서명('24.5월)	향후일정 협의중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타결	에콰도르	타결('23.10월)	향후일정 협의중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GCC ⁵⁾	타결('23.12월)	향후일정 협의중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협상 진행	우즈베키스탄	제2차협상('21.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중앙아 최대시장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가입타결('23.9월)	향후일정 협의중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한중일	제16차협상('19.11월)	향후일정 협의중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⁶⁾	제7차협상('21.8월)	향후일정 협의중	남미 최대 시장
	인도 개선	제11차협상('24.7월)	향후일정 협의중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칠레 개선	제8차협상('23.11월)	향후일정 협의중	통상환경 변화 반영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	제9차협상('20.10월)	향후일정 협의중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러시아 서비스·투 자	제5차협상('20.6월)	향후일정 협의중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 시장
	말레이시아	제4차협상('24.8월)	향후일정 협의중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 여
	IPEF ⁷⁾	제7차협상('23.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인태지역 주요 경제블록

-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포함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7)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인니, 베트남, 말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피지
- 기존 FTA와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으로, 직접적인 시장개방 요소 미포함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검토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이라 한다)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래 표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한-필리핀 FTA 추진시 동 법률상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함.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경과 >

구 분		주요 내용	경과 및 결과
협상 전 절차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	○ 통상조약계획수립 ○ 통상조약계획의 국회보고	○ '19.5.20 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 '19.5.29 국회 산중위 보고 -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공청회 개최 (제7조)	○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19.5.7 공청회 개최
	FTA 체결 이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시	○ '19.4~5월 경제적 타당성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체결시 실질 GDP, 후생 등 긍정적 효과 - 실질 GDP 0.003%~0.007%, 후생 54~124백만불 증가
협상 절차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0조)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없음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1조)	○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문위 설치 '12.11월 ○ 8차 '16.11월 : 최근 통상협상 동향 및 대응 계획 ○ 9차 '17.3월 : 최근 FTA 동향 및 대응방향 ○ 11차 '18.7월 : 주요 FTA 추진 계획 ○ 13차 '19.6월 : FTA 추진 전략 ○ 14차 '22.2월 : 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경과 및 결과
협상 후 절차	영향평가 (제11조)	○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 관련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	○ '22.7~11월 영향평가 진행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협상결과보고 (제12조)	○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회 및 국민에게 알려야함	○ 서명일: '23.9.7 ○ 국회 보고 일자: '23.11.30 산중위 보고 ○ 협정문 공개: '23.12.14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 통상조약의 서명 후에는 비준동의요청 필요 ○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결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보완대책,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무회의 의결일 '23.12.5 ○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일 '23.12.6 - 영향평가결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 산업보완대책, 법률 제개정사항 모두 포함 ○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비준동의안 폐기 '24.5.29 ○ 국회 비준동의안 재제출일 '24.8.27
	설명회 개최 (제14조)	○ 조약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노력해야 함	○ 비준 이후 발효 전, 활용 설명회 개최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법」 제12조⁶⁾에서는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필리핀 FTA는 양국간 서명이 이루어진 2023. 12. 5. 이후, 2개월 이상 경과된 2023. 11. 30. 국회에 보고되었음.⁷⁾ 국회 보고가 지연된 사유는 2023. 9. 7. 서명 직전 우리 산업부와 필리핀 통상부간 사전 검토 과정에서 용어 변경(KOR→KH)에 합의하고, 동 변경 절차 완료(용어 변경 동의를 확인하는 외교공한 교환) 조치에 약 2개월이 기간이

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상결과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7) 이에 비해, 기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양국간 서명이 이루어진 2020. 11. 15. 이후 2020. 11. 26. 국회 보고되었음.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FTA 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양국간 협상 및 국내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FTA 서명 이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동 건의 경우 서명 검독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3. 주요내용 및 평가

한-필리핀 FTA는 아래와 같이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됨.

< 한-필리핀 FTA의 구성 >

구분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총칙	서문	서문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기반 확보 등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목적 확인
	제1장	일반규정	여타 협정과와의 관계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상품	제2장	상품 무역	상품 무역의 기본원칙 및 관세철폐 일정 등 규정
		- 관세양허 부속서	- 관세 철폐 및 감축 계획 규정
	제3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 관세 관련 규정
	제4장	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원산지 절차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방식
	제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협력 강화 규정
협력 및 총칙	제6장	경쟁	경쟁관련 법·규정의 기본원칙,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등 규정
	제7장	경제 및 기술협력	협력의 범위 및 형태,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 공중보건위기상황과 팬데믹 협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사회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한 상품 및 필수 인력의 이동보장, 우수관행 공유 등 협력 규정
		- 백신에 대한 협력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의 제조, 연구, 지식 및 기술이전 등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 규정
		-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우수관행 및 기술 노하우 교환 등 협력사항 규정
	제8장	투명성	양국의 행정절차 및 행정조치의 투명성 강화
	제9장	분쟁해결	양국간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중재패널 등의 절차 규정
	제10장	예외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및 과세 예외
	제11장	제도적 장치	공동위원회, 위원회 및 작업반, 접촉선 등 규정
	제12장	최종 규정	협정의 개정, 발효 및 종료 등 규정

가. 상품 양허결과

한-필리핀 FTA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⁸⁾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기존의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수 기준 (한) 89.9% - (필) 76.5%, 수입액 기준 (한) 87.0% - (필) 84.7%의 자유화율이 달성된 바 있음.

동 한-필리핀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3.6%p, 수입액 기준 9.8%p(3.6억불)를 추가 개방하고, 필리핀 측은 품목수 기준 18.5%p, 수입액 기준 12.9%p(8.4억불)를 추가 개방함. 이에, 품목수 기준 (한) 93.5% - (필) 94.9%, 수입액 기준 (한) 96.8% - (필) 97.6%의 자유화율을 달성함.

아울러 2022년 2월 기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양허수준을 포함하면, 양국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한) 94.8% -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 (필) 97.6%를 달성함.

8) 2007년 6월 발효

< 한-필리핀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3,635,853,788		11,202		6,484,708,239	
한-아세안 FTA	10,994	89.9%	3,162,093,626	87.0%	8,564	76.5%	5,489,772,090	84.7%
즉시 철폐	170	1.4%	14,126,741	0.4%	634	5.7%	516,570,068	8.0%
3년 철폐	38	0.3%	15,888,142	0.4%	167	1.5%	11,373,010	0.2%
5년 철폐	52	0.4%	298,322,345	8.2%	259	2.3%	85,682,277	1.3%
7년 철폐	1	0.0%	15,444,440	0.4%	-	-	-	-
10년 철폐	80	0.7%	3,380,683	0.1%	47	0.4%	1,250	0.0%
15년 철폐	105	0.9%	9,685,787	0.3%	963	8.6%	223,091,199	3.4%
소계	446	3.6%	356,848,137	9.8%	2,070	18.5%	836,717,804	12.9%
최종 관세철폐율	11,440	93.5%	3,518,941,763	96.8%	10,634	94.9%	6,326,489,894	97.6%

< 한-필리핀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RCEP 반영시)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3,635,853,788		11,202		6,484,708,239	
한-아세안 FTA	10,994	89.9%	3,162,093,626	87.0%	8,564	76.5%	5,489,772,090	84.7%
RCEP 추가철폐	523	4.3%	72,851,004	2.0%	1,429	12.8%	522,989,898	8.1%
한-아세안 FTA + RCEP*	11,517	94.2%	3,234,944,630	89.0%	9,993	89.3%	6,012,761,988	92.8%
즉시 철폐	11	0.1%	257	0.0%	344	3.1%	196,196,765	3.0%
3년 철폐	27	0.2%	8,645,046	0.2%	-	-	-	-
5년 철폐	33	0.3%	284,343,377	7.8%	232	2.1%	83,422,895	1.3%
10년 철폐	3	0.0%	226	0.0%	-	-	-	-
15년 철폐	11	0.1%	330,229	0.0%	245	2.2%	38,006,529	0.6%
소계	85	0.7%	293,319,133	8.1%	821	7.3%	317,626,189	4.9%
최종 관세철폐율 (한-아세안 +RCEP +한-필리핀 FTA)	11,602	94.8%	3,528,263,763	97.0%	10,814	96.5%	6,330,388,177	97.6%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9)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편직제의류(기준세율 5%), 당류(3%), 제 어용케이블(0/5%), 의류 약세서리(5%), 직물제의류(5%), 승용차(8%), 화물자동 차(10%), 자전거부품(5%), 이륜차부품 (8%), 선박용부품(5%),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5%), 기타 석유제품(5%) 등	170	즉시 철폐	634	화물자동차(기준세율 5%), 구리선(1%), 승용차(가솔린·디젤)(5%), 전기자동차 (SUV)(5%), 구리선(1%), 초산(3%), 의약 품(1%), 오르토프탈산디옥탈(1%), 접착 제(1%), 아세톤(1%), 텍스트린과 그밖의 변성정분(3%), 폴리카보네이트(3%), 자 동차부품(5%), 철도차량부품(1%), 에틸 렌프로필렌고무(1%), 저밀도에틸렌(3%), 초산비닐(1%), 건축용목제품(1%) 등
편직제의류(5%), 직물제의류(5%), 판유 리(5%), 폴리에스터사(5%), 모사(5%), 당류(5%), 판유리(5%), 방모직물(5%), 질소비료(5%), 수산화나트륨(5%)	38	3년 철폐	167	통신선(5/0%), 된장(5/0%), 표백(5%), 순면사(5%), 감(10/0%), 장갑(5/0%), 폴리아미드(5%), 기타면사(5%), 두발 용 제품류(10%), 일차전지(5/0%), 합 성필라멘트사(5%), 비누(10%), 생지 (5%), 언더셔츠(5/0%) 등
바나나(30%), 자동차부품(8%), 면류 (5%), 곡류가공품(5%), 브랜드(5%), 전 기자동차(8%), 승용차(8%), 화물자동차 (10%)	52	5년 철폐	259	승용차(하이브리드)(5%), 10인이상 승 합차(하이브리드)(5%), 전기자동차(세 단)(5%), 완충기(10%), 서스펜션(10%), 통신선(5/0%), 합판(10.4/5%), 섬유판 (15/6.4/5/0%) 등
파인애플(기타조제)(36%)	1	7년 철폐	-	-
사탕(8%), 원당(3%), 야자유(3%), 세안 용품(5%), 과일주스(5%), 두발용 제품 (5%), 위스키(5%), 저압케이블(0/5%), 합판(5%), 커피조제품(8%), 기타채소 (5%), 바나나(플랜틴)(30%), 커피(8%), 곡류가공품(5%), 정밀화학제품(5%), 합판(5%)	80	10년 철폐	47	신사복상의(5%), 스웨터(5%), 기타주 류(5/0%), 기타농산가공품(7%), 유아 용조제식료품(7%), 밀가루(5/7%), 퀴 노아(7%), 토란(5%), 양(5%), 시금치 (5%), 피조개(5/0%), 대구(5%), 참치 (5%), 넙치(5%), 가자미(5%) 등
맥주(15%), 과일주스(5~40%), 기타과실 (24%), 사료(40.4%), 파파야(24%), 기타당 류(5%), 어류통조림(16%), 면류(5%), 참치 (5%), 굴(5%), 수목류(5%), 기타어류 (10%), 구아바(24%), 꽃게(16%) 등	105	15년 철폐	963	와이어하네스(30%), 편직물(5%), 기타 플라스틱제품(5/15%), 굴판지(5%), 참 치(5%), 아연도강판(5%), 기타수산물 가공품(5%), 공기조절기(5%), 소주(5%), 커피조제품(5%), 기타주철(5%), 폴리 메탄아크릴산메틸(5%), 기타문구(5%), 간장(5%), 무기류(15%) 등
갑오징어(5%), 조개(5%), 게(11.2%), 체리 (5%), 볼베어링(5%), 위스키(5%), 오리고 기(14.4%) 등	146	관세 감축 10)	68	기타플라스틱제품(12%), 자기제 식탁 용품 및 주방용품(12%), 기타문구(15%), 스프링(15%), 차량용의자(15/30%), 양 탄자(15%), 기타고무제품(5%), 대구(냉 동)(10%), 갈치(냉동)(10%), 감귤(10%), 보리가루(10%) 등
	592	총 합계	2,138	

9) 한-아세안 FTA 대비 한-필리핀 FTA에서 추가 양허된 품목

10) (한국 양허) 15년까지 50% 감축, (필리핀 양허) ①8년까지 33%감축, ②8년까지 50% 감축, 또는 ③
15년까지 50% 감축

< RCEP 고려시 한-필리핀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¹¹⁾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기타인조 섬유장섬유사(5%), 기타사진영화용재료 (1.625%) 등	11	즉시 철폐	344	승용차(가솔린)(5%), 승용차(디 젤)(5%), 전기자동차(SUV)(5%), 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5%), 화물차(가 솔린)(5%), 화물차(디젤)(5%), 기어박 스(5%), 제동장치(5%) 등
직물제의류(5%), 폴리에스터사(5%), 모 사(5%), 당류(5%), 수산화나트륨(5%) 등	27	3년 철폐	-	-
바나나(30%), 자동차부품(8%), 화물자 동차(10%), 기타승용차(8%), 면류(5%), 잼, 과실젤리(5%), 암(5%) 등	33	5년 철폐	232	승용차(하이브리드)(5%), 10인 이상 승합차(하이브리드)(5%), 전기자동차 (세단)(5%), 완충기(10%), 서스펜션 (10%), 화물차(기타, CKD)(5%),
바나나(플랜틴)(30%), 통신선(0/5%), 기타채소(5%) 등	3	10년 철폐	-	-
제재목(5%), 고밀도화 목재(5%), 과일주 스(5%), 기타당류(5%), 밤(24%), 굴(5%) 등	11	15년 철폐	245	냉동어류(5%), 공기조절기(5%), 수산 화나트륨(5%), 기타플라스틱제품 (5%), 커피조제품(5%), 기타주철(5%), 면류(5%), 고등어(냉동)(5%), 냉장고 (5%), 나선용 스프링(5%), 고추(5%) 등
게(11.2%), 오징어(냉동, 5%), 타일 (5/0%), 볼베어링(5%) 등	15	관세 감축	44	기타플라스틱제품(12%), 자기제 식탁 용품 및 주방용품(12%), 기타문구 (15%), 스프링(15%), 차량용 의자 (30/15%), 기타조명기기(20%), 양탄 자(15%) 등
	100	총 합계	865	

11) 한-아세안, RCEP에서 미철폐된 품목 중 한-필리핀 FTA에서 추가양허된 품목

나. 원산지

1) 원산지 규범

원산지 규범이란,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 것임.

한-필리핀 FTA는 여타 FTA들과 같이 원산지 기준으로 완전 생산 기준, 원산지 재료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규정함.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공산품과 관련하여 기계·전자기기 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부분품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일반 기준으로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함.

다만 완성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도입 시 단순 조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단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함.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관련, 별도 부속서(부속서 4-

다)를 도입하여 추후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나 원산지 인정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음.

3)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에서는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고,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이행(발효 후 인증수출자 즉시, 수출자·생산자 10년내)하기로 함. 관세당국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에 정보를 서면 요청, 수출국에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4.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

가. 양국간 교역현황

2022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은 123억달러, 수입은 52억달러로 7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양국 간 교역액은 2019년~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한 후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양국간 2022년 총 교역규모는 175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877억달러), 싱가포르(305억달러) 등에 이어 제5위 교역국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등이며,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산업용 전자기기, 과실류, 동제품 등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전자 제품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공정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반도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음.

나. 경제적 효과

1)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2022)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 발효 시, 단기적(5년간)으로 실질 GDP는 약 0.01% 증가, 소비자

후생은 약 1억 3,100만달러 개선, 장기적(15년간)으로 실질 GDP는 약 0.01% 증가, 소비자 후생은 약 1억 6,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필리핀 FTA의 경제적 효과 >

구 분	단기 (5년)	장기 (15년)
실질 GDP 추가 증가율	0.01%	0.01%
후생 수준 증가분	1억 3,100만 달러	1억 6,000만 달러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각각 분석한 한-필리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검토하였음.

가) 제조업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 발효 시 자동차,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섬유 등에서 수입이 확대되어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3억 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9,93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됨.

이에 따라 한-필리핀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662억원의 생산효과 증대가 예상되며,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화학 등에서 537

억 원의 생산효과 증대가 예상됨.

나) 농업

국내 농업생산액은 15년 누적 약 1,426억원, 연평균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민감품목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제외로 보호하였으며,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바나나를 추가 개방하였음.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 영향으로 과실류에서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10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으며, 배 등 신선농산물의 관세 감축으로 향후 필리핀 시장 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수산업

한-필리핀 FTA 발효 시 소금과 어류 등에서 발효후 15년간 연평균 24,148달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 감소액은 발효후 15년간 연평균 1,022만원 수준으로 한-필리핀 FTA가 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3) 국내 고용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영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고용 및 재정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였음.

산업별 생산효과를 이용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도출하면, 2023년에 한-필리핀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근로자는 발효 5년 후에는 1,225명 증가, 15년 후에는 1,320명의 증가 효과가 있고, 취업자 전체로는 발효 5년 후에는 1,557명, 15년 후에는 1,540명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한-필리핀 FTA 발효¹²⁾에 따른 산업별 고용효과 >

(단위 : 명)

구 분	임금근로자 증가효과		취업자수 증가효과	
	2028	2038	2028	2038
농수산업	37	58	322	3,990
제조업	434	401	406	321
서비스업	754	860	829	829
합계	1,225	1,320	1,557	1,540

재정 관련, 한-필리핀 FTA로 인한 세수입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610.2억원의 세수입이 감소¹³⁾(직접 감소효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FTA 체결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187.9억원의 세수입 증가(간접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12) 한-필 FTA 2023년 발효 가정 시

13)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분 내국세(수입분 부가가치세 등) 감소액 10년간 연평균 약 2.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임

전체적으로 한-필리핀 FTA 발효 후 10년 간 연평균 약 422억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2022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약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필리핀 FTA 체결이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추정됨.

<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세수 영향 >

(단위: 억 원)

구 분	세수감소			세수증가	세수변화
	관세수입 감소효과	수입분 내국세 효과	합 계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1~5년차	-462.8	-2.1	-465.0	80.6	-384.4
6~10년차	-753.6	-1.8	-755.4	295.1	-460.3
연평균	-608.2	-2.0	-610.2	187.9	-422.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10년 동안 GDP 추가 성장률 0.0075%p를 이용하여 세수입 효과 추정

다. 보완대책

정부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는 농업분야에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9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산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시 이미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 등을 활용하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 결과,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과실 분야 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77억 원 감소, 과채 분야는 연평균 17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함.

이에 정부는 원예품목(과수·과채)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의 규모화·단지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10년 간 투·융자 1,469억원을 순증하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임.

라. 검토의견(총괄)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다섯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상품 양허결과 양국간 자율화율은 품목수 기준 (한) 93.8% -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 (필) 97.6% 를 달성하여 상품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였고, 자동차,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3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됨. 주요 민감품목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고,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바나나를 추가 개방하였으나,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10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음. 한-필리핀 FTA가 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농업분야에서의 15년간 연평균 9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정부는 농

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바나나 수입 증가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원예품목(과수·과채)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의 규모화·단지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10년간 투·융자를 1,469억원 순증하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임.

이처럼 자동차 분야의 필리핀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같은 필리핀 시장 개방 확대에 인한 기대 효과, 바나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농가 보완대책 마련 등 협상 내용과 준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필리핀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한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제2장 상품 무역

1. 개 요

상품무역은 양국 간 상품 교역에 적용될 일반 규범을 협정문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양허유형을 부속서에 규정함.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므로, 상품시장 개방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이자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협정 제2장(상품무역)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됨. 협정문 본문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내국민 대우 등 상품시장 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부속서는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양허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수입허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상품무역에 대한 비관세조치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민감품목의 보호 방안으로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도입함.

3. 주요 협상경과

2019년 4월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 계기 우리의 아세안 5대 교역국인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함. 양국은 2019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5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의 회기간 협의 등을 개최하여 2021년 10월 협상을 최종 타결함.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필리핀측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 관심품목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함. 아울러, 우리 농수산물 등 주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관세 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필리핀측 입장

필리핀측은 최대 관심 품목인 바나나를 비롯하여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의 단기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함. 우리측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해서도 필리핀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시장 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대응할 의사를 포함.

다. 협상결과

필리핀측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아울러,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우리측 주요 농수산물은 대부분 한-아세안 FTA 및 RCEP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의 개방 수준을 유지함. 필리핀측 최대 관심품목인 바나나에 대해서는 5년 관세철폐로 개방하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마련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제2.4조)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4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그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특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그러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시 적용 가능한 더 낮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관세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Article 2.4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reduce or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reflected in Annex 2-A. 2. In accordance with the WTO Agreement,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eligible, at the time of importation, for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for those goods in a Party, where that MFN applied rate is lower than the preferential rate of customs duty provided for in that Party's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Subject to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importer may apply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y paid for a good if the importer did not make a claim for the lower MFN rate applicable at the time of importation.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new customs duty, on originat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goods of the other Party, as provided in its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양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도록 함(협정 제2.4조제1항).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수입 당시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협정 제2.4조제2항).

아울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2.4조제3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대부분의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상품 교역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음. 나아가, 한-아세안 FTA 및 RCEP에서 아세안 측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동결조항(standstill, 협정 제2.4조제3항)을 포함함.

< 기체결 FTA 협정문 내용 비교 >

한-필리핀	RCEP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니	한-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조항 안에 동결조항(제2.4조제3항) 포함	관세철폐 및 인하 관련 내용만 규정 (동결조항 없음)	관세철폐 및 인하 관련 내용만 규정 (동결조항 없음)	관세 인하 및 철폐와 별도로 동결 조항(제2.4조) 규정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조항 안에 동결조항(제2.4조제1항) 포함	관세 철폐 조항 안에 동결조항(제2.3조제1항) 포함

3) 검토의견

동결조항이란, 협정 당시 기준 세율을 협정 세율로 지속 유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항임. 예컨대 기준세율 10%인 품목이 양허제외된 경우 동결조항이 없으면 향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수 있으나, 동결 조항이 도입되면 관세율 인상이 불가능함.

우리 정부는 거의 모든 기체결 FTA에 동결조항을 반영하여 협정 발효 이후 기준세율이 상향조정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경우 아세안 측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동결조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음.

이와 달리 한-필리핀 FTA에서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조항 안에 동결조항을 반영하여 협정 발효 이후 기준세율이 상향조정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높은 무역 자유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제2.9조)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9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경우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 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그러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나. 그러한 상품이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를 가진 경우, 그리고 다. 그러한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Article 2.9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1. Each Party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goods to b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if such goods: (a) ar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for a specific purpose; (b) are intended for re-exportation within a specific period; and © have not undergone any change, except normal depreciation and wastage due to the use made of them. 2. Each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and for reasons its customs authority considers valid, extend the time limit for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beyond the period initially fixed. 3. Neither Party shall condition the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ther than to require that the goo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a) be used solely by or under the personal supervision of a national or resident of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 business activity, trade, profession, or sport of that person;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b) not be sold or leased while in its territory;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c) be accompanied by a security or guarantee in an amount no greater than the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that would otherwise be owed on entry or final importation, releasable on exportation of the good;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d) be capable of identification when imported and exported;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 be exported on the departure of the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within such other period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temporary admission as the Party may establish, unless extended;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f) be admitted in no greater quantity than is reasonable for its intended use; and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g) be otherwise admissible into the Party's territory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If any condition that a Party imposes under paragraph 3 has not been fulfilled, the Party may apply the customs duty and any other charge that would normally be owed on the good in addition to any other charges or penalties provided for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Each Party shall permit a good temporarily admitted under this Article to be re-exported through a customs port other than that through which it was admitted.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의도로 일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 조건부 면세 반입을 허용함(제2.9조제1항).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에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서도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함(제2.9조제5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일시 반입 물품에 대한 면세는 한-미, 한-베트남, RCEP 등 기체결 FTA에도 규정한 바 있음.

한-필리핀 FTA에서는 일시 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종류

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에, RCEP, 한-인니, 한-캄보디아 FTA와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폭넓게 규정하였음.

< 기체결 FTA 협정문 내용 비교 >

한-필리핀	RCEP	한-캄보디아	한-인니	한-베트남	한-미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 품목 면세	한-필과 동일.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 품목 면세	한-필과 동일.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 품목 면세	한-필과 동일.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 품목 면세	면세 대상 일시 반입 품목 구체적 열거 (전시용·스포츠 용·광고 용 등)	면세 대상 일시 반입 품목 구체적 열거 (전시용·스포츠 용·광고 용 등)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기체결 FTA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수입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국내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¹⁴⁾에도 반영되어 있음.

기체결 FTA와 비교하였을 때 일시 무관세 반입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폭넓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생략)

게 허용한 것은 동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일시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통해 수출업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양국 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15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연도에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합치하게,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그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가 부과된 특정 연도의 연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Article 2.15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1. Notwithstanding Article 2.4, a Party may apply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only up to the end of that particular year when it was imposed, in the form of a higher import duty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listed in that Party's Schedule to Annex 2-B, consistent with paragraphs 2 through 7 if the aggregate volume of imports of that good in any year exceeds a trigger level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2-B. 2. The duty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a) the prevailing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b)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다. 부속서2-나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 the duty rate set out in the applying Party's Schedule to Annex 2-B.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3. The duties each Party appl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t according to the maximum duty that may be applied each year for each such good in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2-B.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4. Neither Party may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and at the same time apply or maintain, with respect to the same good:
가. 제3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a)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under Chapter Three (Trade Remedies);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b)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or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 a measure under any agricultural safeguard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5. A Party shall implement any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in a transparent manner. Within 60 days after imposing a measure, the Party applying the measur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provide the other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그 서면 요청의 접수로부터 45일 내에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with relevant data concerning the measure. 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ithin 45 days upon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20조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rticle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review in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under Article 2.20.
7. 부속서 2-나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7. Neither Party shall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if the period specified in the agricultural safeguard provisions of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2-B has expired.

부속서 2-나에 규정된 필리핀산 농산물(바나나)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음.

농산물 세이프가드란 FTA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가격 또는 물량이 설정된 수준(trigger level)을 초과하는 경우, 양허표에 따른 관세 감축을 일시 중지하고 관세인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임.

이는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trigger level이 정해져 있으며 발동에 따른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세이프가드와 구별되며,

품목별로 발동 가능 기한을 설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기한없이 발동가능한 WTO 농산물 세이프가드(SSG)와도 구별됨.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MFN) 실행세율 또는 부속서 2-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례법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기준발동물량·세율·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는 한-미, 한-EU FTA 등에서 쇠고기 등 육류 및 사과 등 과실류 보호를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을 둔 바 있음. 기체결 FTA는 통상적으로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기간 동안, 혹은 예외적으로 관세철폐 후 3년까지에 한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허용하였음. 반면, 한-필리핀 FTA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기간을 관세철폐 후 5년까지로 확대¹⁵⁾함.

15)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바나나 5년 철폐 기간 이후 5년까지 확대하므로 총 10년간 운영)

3) 검토의견

필리핀측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급증을 방지하고 관련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량이 15년간 연평균 3,000톤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바나나 소비가 늘면 대체 과일인 사과, 복숭아 등의 소비가 감소하여 농업생산액이 15년간 연평균 약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산물 셰이프가드 발동 가능 기간을 관세철폐 후 5년까지로 확대하는 조항은 타당함.

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16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9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Article 2.16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2.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Chapter Nine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rticle.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함(협정 제2.16조제1항 및 제2.17조제1항).

어떠한 당사국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9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음(협정 제2.16조제2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이하 “SPS”) 조치에 대해 별도의 장을 만들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한-필리핀 FTA의 경우 한-캄 FTA처럼 상품 무역 장에서 일부 조항을 삽입하는 데에 그침.

기체결 FTA와 그 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련 기체결 FTA와의 비교 >

	구 성		내 용										
	챕터	조항수	목적	적용 범위	권리 의무	동등성	위험 평가	자주화	방제, 검사, 승인 절차	투명성	SPS 이행 채널	FTA 분쟁 해결	협력
필리핀	상품 무역	2	-	-	○	-	-	-	-	-	-	배제	-
WTO	SPS 협정	14 (+3개 부속서)	○	○	○	○	○	○	○	○	○	WTO 분쟁 해결	△ (기술 지원)
아세안	상품/경제 협력	2 (협력 관련)	-	-	-	-	-	-	-	○	○ (직접반)	적용	○
베트남	SPS	6	○	○	○	-	-	-	-	-	○	배제	○

	구 성		내 용										
	챕터	조항수	목적	적용 범위	권리 의무	동등성	위험 평가	자유화	방제, 검사, 승인 절차	투명성	SPS 이행 채널	FTA 분쟁 해결	협력
이스라엘	SPS	8 (+1개 부속서)	○	○	○	-	-	-	-	○	○	배제	○
캄보디아	상품 무역	7	○	○	○	-	-	-	-	○	-	배제	○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시장 접근	3	-	-	○	-	-	-	-	-	-	배제	○
RCEP	SPS	17	○	○	○	◎ (그룹/제도별)	◎ (위험 분석)	○	○	◎ (의견 수렴 60일)	◎ (+기술 협의)	배제	○

한편, 한-미 FTA, 한-EU FTA, RCEP 등 기체결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SPS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문안을 마련함.

다른 통상이슈에 비해 SPS 관련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측면이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구 판례를 통해 WTO SPS 협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가짐. 이에 따라 양국간 SPS 이슈에 대해서는 상품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임.

3) 검토의견

한-필리핀 FTA 협상 과정에서는 한-필리핀 FTA의 위생 및 식물위

생 조치 규정은 한-ASEAN FTA 협정문에 기초¹⁶⁾하고, 당시 진행중이던 RCEP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RCEP은 우리 정부의 기체결 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련 권리와 의무가 규정¹⁷⁾되어 있음.

RCEP에서는 협력·협약 강화 규정, 관련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한 WTO SPS 협정 이행 강화, SPS 조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절차 및 요건 명시, 당사국들 간 설명 및 협의 기회부여, SPS 접촉선 지정, 상품위원회에서 당사국들 간 SPS 협력·소통 강화, 당사국 간 SPS 분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한-필리핀 FTA에서 SPS 관련 규정이 상품무역 장에서 일부 조항을 삽입하는 수준이더라도 한-필리핀 양국간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기체결된 RCEP 협정을 통해 준수될 것으로 봄.

1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8조(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5. 상품양허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결과

기존에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품목수 95.1% 수입액 98.4%)에 대해 이미 관세철폐를 완료(2010년)한 바 있음.

한-필리핀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483개 공산품 중 328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장 개방(모두 15년 내 관세철폐)을 하였음.

우리의 對필리핀 공산품 수입은 대부분 이미 개방된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그간 미개방된 품목 중에서는 의류, 석유제품 등이 주요 수입품이며, 국내 민감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 제트유, 타일 등 공산품 85개 품목과 합판, 제재목 등 임산물 59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공산품·임산물(9,264개) 중 품목수 기준 82.2%(7,616개), 수입액 기준 85.2%(54억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이번 한-필리핀 FTA에서 필리핀은 품목수 기준 97.8%(9,062개), 수입액 기준 97.7%(62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는바, 이는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5.6%(1,446개), 수입액 기준 12.5%(8억불)를 추가로 관세철폐한 것임.

특히 우리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

한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 기업의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對필리핀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차 및 승용차(관세율 5%)에 대해 즉시 철폐, 준중형 승용차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5%)에 대해 5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주요 자동차 부품(3~30%)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내 관세 철폐 예정임. 또한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되어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보임.

< 한-필리핀 FTA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

※ 임산물 포함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9,436	95.1%	3,032,566,337	98.4%	7,616	82.2%	5,435,034,477	85.2%
즉시 철폐	166	1.7%	6,752,183	0.2%	507	5.5%	507,335,018	8.0%
3년 철폐	37	0.4%	15,888,126	0.5%	160	1.7%	9,098,923	0.1%
5년 철폐	45	0.5%	14,268,031	0.5%	258	2.8%	85,681,555	1.3%
(5년 이내)	248	2.5%	36,908,339	1.2%	925	10.0%	602,115,495	9.4%
7년 철폐	-	-	-	-				
10년 철폐	47	0.5%	362,661	0.0%	2	0.0%	1,250	0.0%
(10년 이내)	295	3.0%	37,271,000	1.2%	927	10.0%	602,116,746	9.4%
15년 철폐	33	0.3%	436	0.0%	519	5.6%	196,925,597	3.1%
철폐 소계	328	3.3%	37,271,435	1.2%	1,446	15.6%	799,042,342	12.5%
최종 관세철폐율	9,764	98.4%	3,069,837,772	99.6%	9,062	97.8%	6,234,076,819	97.7%
관세 감축	11	0.1%	4,105	0.0%	43	0.5%	14,196,863	0.2%
양허 제외	144	1.5%	11,859,795	0.4%	159	1.7%	131,853,871	2.1%
합계	9,919	100%	3,081,701,672	100.0%	9,264	100%	6,380,127,553	100.0%

* 품목수 기준: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 목 수		품 목 수	주요 품목
바지 스커트, 남성아우터셔츠, 절연코드세트, 중유, 장갑, 코트 및 자켓, 신사복상의, 승용차(불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 압축점화식 2,500시시 이하), 여성양복상의, 화물자동차, 자전거부품, 이륜차부품, 화운데이션, 선박용 부품,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모터사이클, 잠옷, 자동차부품, 손수건 스카프, 양말,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 이륜차, 면사, 사진영화용재료, 의약품, 윤활유 등	166	즉시 철폐	507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메모리반도체,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화물차(디젤), 화물차(가솔린), 승용차(디젤), 승용차(가솔린), 승용차(기타), 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의약품,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자동차부품, 접착제, 기타석유화학제품, 베어링,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스틸렌, 연결부품, 기타플라스틱제품, 철도차량부품 등
언더셔츠, 신사복 상의, 남성바지, 남성셔츠, 스웨터, 여성바지스커트, 판유리, 폴리에스터사, 소모사, 방모사, 질소비료, 수산화나트륨 등	37	3년 철폐	160	통신선, 표백, 순면사, 장갑, 폴리아미드수지, 두발용 제품, 기타면사, 건전지, 폴리에스터사, 고압 케이블, 비누, 건축용 목제품, 위생용기, 언더셔츠, 철도차량 부품, 기타 고무제품, 자전거, 합판, 타일,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제재목 등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용차(압축점화식 2,500시시 초과, 압축점화식 2,500시시 이하) 등	45	5년 철폐	258	기타승용차(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10인 이상 승합차(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자동차부품, 통신선, 화물차(기타, CKD), 합판, 섬유판 등
-	-	7년 철폐	-	-
세안용품, 두발용 제품, 저압케이블, 합판, 기타정밀화학원료, 통신선,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기타고무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시멘트, 백시멘트, 시멘트크링커 등	47	10년 철폐	2	신사복 상의, 스웨터
제재목, 윤활유, 기타타일및도자기, 기타목재류, 합판, 파티클보드	33	15년 철폐	519	와이어하네스, 편직물, 기타 플라스틱제품, 의류부속품, 용융아연도강판, 기타 폴리에스터직물, 공기조절기, 수산화나트륨, 연결부품, 플라스틱갈개및벽피복, 접착제, 섬유기계, 기타문구, 에틸렌중합체필름, 무기류부품, 유아용냅킨, 철강재용기 등
베어링, 위생용기, 타일	11	관세 감축	43	기타플라스틱제품, 자기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기타문구, 스프링, 차량용의자, 기타조명기기, 양탄자 등
	339	총합계	1,489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 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자동차부품	8	13,879	5년 철폐	화물차 (디젤, 5톤이하)	5	35,660	즉시 철폐
2	기타정밀화학제품 (라우릴 알코올)	3	8,210	양허 제외	동선 (횡단면 6mm 초과, 14mm 이하)	1	21,186	즉시 철폐
3	편직제의류 (언더셔츠)	5	6,338	3년 철폐	와이어하네스 (제어용케이블)	30	12,690	15년 철폐
4	직물제의류 (신사복상의)	5	4,030	3년 철폐	기타합성수지	10	9,855	즉시 철폐
5	편직제의류 (바지 스커트)	5	3,882	즉시 철폐	기타플라스틱제품	12	8,958	관세 감축
6	제트유 (제트 연료유)	3	2,482	양허 제외	동선 (횡단면 6mm 초과, 기타)	1	6,896	즉시 철폐
7	직물제의류 (남성바지)	5	2,295	3년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8	직물제의류 (남성셔츠)	5	2,033	3년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9	편직제의류 (남성아우터셔츠)	5	1,030	즉시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10	합성수지 (고밀도에틸렌)	5	896	양허 제외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중형)	5	6,880	5년 철폐
	(10대 수입소계)		45,076		(10대 수출소계)		122,766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3,081,702		공/임산물 수출합계 (일반품목 포함)		6,380,128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수입 또는 수출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2018년 MFN 세율 및 2016년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2) 농산물 양허결과

필리핀은 기존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462개) 중 품목수 기준 48.5%(709개), 수입액 기준 60.7%(52백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이번 한-필리핀 FTA에서 필리핀은 품목수 기준 82.1%(1,201개), 수입액 기준 91.2%(78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음.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커피조제품, 대두, 곡분류 등은 즉시 철폐, 인삼류, 고추, 배, 된장, 소주 등은 15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는바, 우리 측의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농산물 분야 개방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쌀 및 관련 제품과 감자, 녹두 등 식량작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망고, 파인애플, 사과 등 신선 과실류는 양허 제외하였음. 바나나는 5년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¹⁸⁾를 확보함.

18)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

〈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1,081	66.3%	115,234,155	22.1%	709	48.5%	51,748,685	60.7%
즉시 철폐	3	0.2%	4,039,229	0.8%	92	6.3%	8,701,309	10.2%
3년 철폐	1	0.1%	16	0.0%	7	0.5%	2,274,087	2.7%
5년 철폐	7	0.4%	284,054,314	54.6%	1	0.1%	723	0.0%
(5년 이내)	11	0.7%	288,093,559	55.4%	100	6.8%	10,976,118	12.9%
7년 철폐	1	0.1%	15,444,440	3.0%	-	-	-	-
10년 철폐	30	1.8%	3,018,022	0.6%	30	2.1%	0	0.0%
(10년 이내)	42	2.6%	306,556,021	58.9%	130	8.9%	10,976,118	12.9%
15년 철폐	52	3.2%	9,457,220	1.8%	362	24.8%	14,978,373	17.6%
철폐 소계	94	5.8%	316,013,241	60.7%	492	33.7%	25,954,491	30.4%
최종 관세철폐율	1,175	72.1%	431,247,396	82.9%	1,201	82.1%	77,703,175	91.2%
관세 감축	45	2.8%	8,284,462	1.6%	6	0.4%	32,734	0.0%
양허 제외	410	25.2%	80,812,841	15.5%	255	17.4%	7,506,628	8.8%
합계	1,630	100%	520,344,698	100.0%	1,462	100%	85,242,537	100.0%

* 품목수 기준: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 목 수		품 목 수	주요 품목
원당(사탕수수당), 원당(사탕무당), 기타정밀 화학제품	3	즉시 철폐	92	사료, 커피조제품, 음료베이스, 기타식물성 물질, 된장, 인삼음료, 분유, 식물성액즙, 과일주스, 감자, 기타곡분, 고비, 고사리, 소, 초코렛, 대두, 보리가루, 쌀가루, 밀, 레몬, 대추야자, 잣, 강낭콩, 감자, 난초, 기타화초, 버터 등
기타당류(맥아당)	1	3년 철폐	7	된장, 감, 딸기, 사과, 감귤, 양송이, 커피 조제품
바나나, 향미용 조제품, 브랜드, 당면, 곡류 조제품, 양, 감귤류 잼	7	5년 철폐	1	변성전분(접착제)
파인애플(기타조제)	1	7년 철폐	-	-
사탕, 당류(사탕수수당), 야자유, 설탕과자, 과실주스, 브랜드, 위스키, 보드카, 포도증류 주, 기타주, 커피조제품, 스위트콘, 바나나 (플랜틴), 유아용조제식품 등	30	10년 철폐	30	밀가루, 토란·양, 시금치, 톨립, 백합, 오리 알, 식용설육, 기타주류(막걸리)
기타과실, 맥주, 파인애플 주스, 사료, 파파 야, 당류, 국수, 레몬주스, 과실과 견과류, 사료용 조제품, 구아바, 유채유, 꼬낙, 라임 주스, 팝콘, 스위트콘, 라이스 페이퍼, 쌀과 자, 겨자유, 대두유, 청환죽, 감귤류껍질, 체 리, 밤, 두리안, 망고스틴, 대추야자, 렌즈콩, 동부콩 등	52	15년 철폐	362	소주, 브랜드, 인삼류, 된장, 간장, 면류, 밀가루, 기타식물성유지, 치즈, 맥주, 대추, 매실, 고추, 발효유, 참기름, 마가린, 땅콩, 과일주스, 꿀, 곡류가공품, 녹차, 배, 우유, 닭고기, 호박, 참깨, 사료, 칠면조, 토마토, 빵, 오리고기, 식물성한약재 등
기타과실, 버찌, 위스키, 리큐르, 버터조제 품, 칩뿌리, 낚시용사료, 보조사료, 두부, 훈 장, 차, 크랜베리, 살구, 육즙, 대나무, 포도, 레몬, 토란, 강낭콩, 토란줄기, 유장, 거위 등	45	관세 감축	6	감귤, 돼지고기, 보리가루, 기타과실 등
	139	총합계	498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바나나(신선)	30	283,988	5년 철폐	주류(도수 40도 초과)	5	3,159	15년 철폐
2	파인애플 (신선, 건조)	30	58,034	양허 제외	가향 조제식료품	1	2,023	즉시 철폐
3	파인애플 (기타방법조제)	36	15,444	7년 철폐	주류(진·제네바)	5	1,965	15년 철폐
4	기타농산가공품 (과실 각테일)	40	8,314	양허 제외	커피크리머	5	1,965	15년 철폐
5	기타농산가공품 (과실건과기타)	36	8,265	관세 감축	커피조제품	5	1,836	15년 철폐
6	망고 (신선, 건조)	24	8,182	양허 제외	옥수수 전분	16	1,505	양허 제외
7	기타농산가공품 (과실혼합물 기타)	36	3,560	양허 제외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1	1,261	양허 제외
8	원당 (기타 사탕수수당)	3	3,415	즉시 철폐	주류(도수 40도 이하)	5	1,029	15년 철폐
9	기타과실 (과실류의 분)	5	2,403	15년 철폐	된장	5/0	1,027	3년 철폐
10	맥주	15	2,395	15년 철폐	기타 소스	7	1,027	15년 철폐
11	과실주스 (감귤류 주스)	5	1,929	양허 제외	커피조제품	5	768	15년 철폐
12	과실주스 (파인애플 주스)	5	1,364	15년 철폐	기타 조제식료품	5/0	620	3년 철폐
13	과실·견과류(냉동)	24	1,136	15년 철폐	포도당	3	614	양허 제외
14	설탕과자(캔디류)	8	1,053	10년 철폐	감(신선)	10/0	597	3년 철폐
15	사료용 조제품	40.4	1,028	15년 철폐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50	587	양허 제외
16	멜론(파파야)	24	754	15년 철폐	텍스트린 및 변성전분	3	537	즉시 철폐
17	사탕무당	3	624	즉시 철폐	단백질 농축물	3/0	481	양허 제외
18	사탕수수당(당도 98.5 초과)	3	448	10년 철폐	간장	5	345	15년 철폐
19	야자유	3	429	10년 철폐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1	276	양허 제외
20	설탕과자(캔디류 이외 기타)	8	406	10년 철폐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65	276	양허 제외
	(20대 수입소계)		403,170		(20대 수출소계)		21,900	
	농산물 수입합계		520,345		농산물 수출합계		85,243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2018년 MFN 세율 및 2016년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3) 수산물 양허결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수산물(476개) 중 품목수 기준 50.2%(239개), 수입액 기준 15.5%(3백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필리핀은 이번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77.9%(371개), 수입액 기준 76.1%(15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음.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김은 즉시철폐 또는 15년 철폐하고, 가다랑어(냉동), 고등어(냉동) 등은 15년 철폐하였는바,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한편,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對필리핀 수입액이 미미한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수산물 분야 부담 최소화를 도모하였음.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24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철폐함. 우리 주요 생산 어종 또는 對필리핀 수입액이 높은 전복(조제·저장), 새우(냉동), 문어(조제·저장) 등 92개 품목은 양허제외함.

〈 한-필리핀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477	69.8%	14,293,135	42.3%	239	50.2%	2,988,929	15.5%
즉시 철폐	1	0.1%	3,335,329	9.9%	35	7.4%	533,742	2.8%
3년 철폐	-	-	-	-	-	-	-	-
5년 철폐	-	-	-	-	-	-	-	-
(5년 이내)	1	0.1%	3,335,329	9.9%	35	7.4%	533,742	2.8%
7년 철폐	-	-	-	-	-	-	-	-
10년 철폐	3	0.4%	0	0%	15	3.2%	0	0.0%
(10년 이내)	4	0.6%	3,335,329	9.9%	50	10.5%	533,742	2.8%
15년 철폐	20	2.9%	228,132	0.7%	82	17.2%	11,187,229	57.9%
철폐 소계	24	3.5%	3,563,461	10.5%	132	27.7%	11,720,971	60.6%
최종 관세철폐율	501	73.4%	17,856,595	52.8%	371	77.9%	14,709,900	76.1%
관세 감축	90	13.2%	434,165	1.3%	19	4.0%	49,296	0.3%
양허 제외	92	13.5%	15,516,659	45.9%	86	18.1%	4,578,954	23.7%
합계	683	100%	33,807,418	100.0%	476	100%	19,338,150	100.0%

* 품목수 기준: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1	즉시 철폐	35	김, 대구(건조), 농어(냉동), 기타어류 (냉동), 생선 페이스트, 갑오징어(밀폐 용기에 넣은 것), 전복(훈제)
-	-	5년 철폐	-	-
-	-	7년 철폐	-	-
피조개(종패용), 농어(양식용), 돔(양식용)	3	10년 철폐	15	송어(신선·냉장), 대구(신선·냉장), 황다 랑어(신선·냉장), 가자미(신선·냉장), 기 타 활어
정어리(조제),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 황다랑어(신선·냉장), 성게(냉동), 피조개(냉동), 톨라피아(활어), 기타어류, 전복(냉동), 기타 조개, 꽃게(신선), 오징어(신선·냉장), 다랑어(기타/신선·냉장) 등	20	15년 철폐	82	참치(냉동), 고등어(냉동), 김, 대구(냉 동), 어류통조림, 갑오징어(냉동), 참 치(활어), 멸치(조제), 정어리, 해파리, 넙치(냉동), 가자미(냉동) 등
갑오징어(냉동), 어류조제품, 갑각류(냉동), 다시마, 김, 해파리(조제), 성게(조제), 소라(조제), 달팽이(조제), 새조개(조제), 바지락(조제), 가리비과의 조개(조제), 해초류와 기타조류, 톳(건조, 기타), 다시마(기타, 염장한 것) 등	90	관세 감축	19	대구(냉동), 명태(냉동), 갈치(냉동), 기 타어류(냉동), 등
	114	총 합계	151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려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전복(조제·저장)	5	7,867	양허 제외	가다랑어(냉동)	5	4,715	15년 철폐
2	새우(냉동)	20	3,669	양허 제외	고등어(냉동)	5	4,097	15년 철폐
3	문어(조제·저장)	5	1,988	양허 제외	다랑어의것(냉동)	5/0	4,097	양허 제외
4	새끼뱀장어	5	1,291	양허 제외	황다랑어(냉동)	5	1,568	15년 철폐
5	기타(활어)	8/5	264	양허 제외	고등어(냉동)	5	259	15년 철폐
6	갑오징어(냉동)	5	159	관세 감축	태평양고등어 (냉동)	5	259	15년 철폐
7	어류조제품(연어, 청어 외)	5	127	관세 감축	해초류 (꼬시래기종)	10	125	15년 철폐
8	기타조개(냉동)	5	86	관세 감축	기타어류(냉동)	10/5/0	91	양허 제외
9	새우살(냉동)	20	75	양허 제외	해초류(기타)	10/0	89	양허 제외
10	정어리 통조림	16	65	15년 철폐	해초류(기타)	10/0	89	양허 제외
11	게(냉동)	11.2	62	관세 감축	연어과의 것(냉동)	0/7	73	양허 제외
12	갈치(신선·냉장)	20	59	양허 제외	우뭇가사리종	10/0	68	즉시 철폐
13	갈치(냉동)	10	53	양허 제외	사르가슌종	10	68	15년 철폐
14	굴(조제·저장)	5	51	15년 철폐	기타 새우	15/0	33	양허 제외
15	참치(신선·냉장)	5	43	15년 철폐	대구(냉동)	5	32	15년 철폐
16	오징어 (냉동)	5	40	양허 제외	기타어류(냉동)	0/5/10	27	즉시 철폐
17	성게(냉동)	5	38	15년 철폐	그루퍼(냉동)	10/	27	양허 제외
18	틸라피아(냉동)	10	38	양허 제외	기타어류(냉동)	10/5/0/	27	즉시 철폐
19	참치(기름 담금)	20	30	양허 제외	다랑어(조제·보존)	15	24	15년 철폐
20	갑오징어(냉동)	10	28	양허 제외	기타 해초류	10/0	18	양허 제외
	(20대 수입소계)		16,033		(20대 수출소계)		15,722	
	수산물 수입합계		33,807		수산물 수출합계		16,349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제3장 무역구제

1. 개 요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ies)”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 “반덤핑관세(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measures)”가 있음.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의미함.

“반덤핑관세”¹⁹⁾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19) 반덤핑관세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발생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어 특정 수출국 혹은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 혹은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차이가 있음.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임.

2. 협정문의 구성

무역구제에 관한 협정문 제3장(무역구제)은 긴급수입제한조치(제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2절), 무역구제위원회(제3절)로 구성되어 있음.

제1절에서는 동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였음. 동 조치의 발동기간은 최대 3년(2년+필요시 1년 연장)이며, 필요시 동일품목에 대해 최소 2년 경과 후 재발동이 가능함.

제2절에서는 반덤핑 조치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덤핑 조사 신청 접수 후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서면 통보 및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덤핑마진 산정시 양국간 ‘제로잉(Zeroing)²⁰⁾금지’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고, 반덤핑 부과

20) 덤핑관세를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

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²¹⁾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재심사의 결과로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사가 종료된 상품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조사 신청을 검토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제3절에는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무역구제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이행 감독, 협력 추구, 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3. 주요 협상경과

정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무역구제 협상 과정에서 대다수의 민감 이슈(동일상품에 대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 제한, 과도기간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관철하였음.

이와 관련,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상품에 대해 최소 2년을 경과한 후 조치를 재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필측은 ‘조치를 종료한지 1년 후’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었음.

다만,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산업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조항(누적적 평가)에 관해서는 필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삭제함.

진이 높아지도록 계산하는 것을 제로잉(Zeoring)이라고 함.

21)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적절할 경우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1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3.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Article 3.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means a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3.2; domestic industry means, with respect to an imported good,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those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at good;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substantial cause means a cause that is important and not less than any other cause;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means, in relation to a particular good,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til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completion of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in accordance with a Party's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in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과도기간이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당사국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수입 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형태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Article 3.2 Application of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1.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the Party may take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n the form of: (a) suspending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r (b) increasing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i) the most-favored-nation (MFN) rate of duty applied at the time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or (ii) the MFN rate of duty applied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3.3 Conditions and Limitations 1.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n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and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s far in advance as practicable prior to applying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and exchanging views on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제3.3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A Party shall apply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4.2(c)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hich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3. In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th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4.2(a) and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hich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complete any such investigation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initiation. 5. Neither Party shall apply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a)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b)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one year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determine,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Article, that the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provided that the total period of application of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ncluding the period of initial application and any extension thereof,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or (c)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6. A Party may apply a bilateral transition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나.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safeguard measure more than once against the same good, if deemed necessary, provided that at least two years has elaps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on the import of that product. 7.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importing Party shall progressively liberalize it at regular intervals. 8. When a Party terminates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the customs duty rate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e Party's Schedule in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measure. Article 3.4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1.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apply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on a provisional basis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have increased as the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d such imports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2. Before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may mak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e Party shall publish a public notice setting out how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importers and exporters, may obtain a non-confidential copy of the application requesting a provision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6.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기간의 종료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7.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3.4조 잠정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	safeguard measure, and shall provide interested parties at least 20 days after the date it publishes the notice to submit evidence and view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 provisional measure. A Party may not apply a provisional measure until at least 45 days after the date its competent authorities initiate an investigation. 3. The apply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before applying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and, on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shall initiate consultations after applying the measure. 4.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which time th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3.3.2 and 3.3.3. 5. The applying Party shall promptly refund any tariff increase if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Article 3.3.2 does not result in a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 are met.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described in Article 3.3.5(b). Article 3.5 Compensation 1. No later than 30 days after it applies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the applying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consult with it regarding appropriate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The applying Party shall provide such compensation as the Parties mutually agre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의 공표일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2.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rough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within 30 day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ultations,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with respect to originating goods of the applying Party that have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safeguard measure. 3. The applying Party's oblig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other Party's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under paragraph 2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terminates. 4. Any compensation shall be based on the total period of application of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which includes the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under Article 3.4. 5. The right of suspen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24 months during which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applied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the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3.6 Global Safeguard Measures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actions taken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In taking measures unde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5. 적용 당사국은 제3.3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3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3.5조 보상 1. 적용 당사국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의 개시로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these WTO provisions, a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WTO rules, exclude imports of an originating product from the other Party if such imports do not in and of themselves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2.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intending to take safeguard measures shall promptly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of all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initiation of a safeguard investigation, the preliminary determination, and the final finding of the investigation. 3. Neither Party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same good, at the same time: (a) a bilateral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and (b)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제3.4조에 따른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5.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고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제3.6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한쪽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한 수입을 배제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	

동 협정에서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초래할 정도로 상대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물량이 증가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MFN) 관세율 또는 양허표상 기준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협정 제3.2조).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해 최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발동을 제한하였으며(협정 제3.3조제6항),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음(협정 제3.5조).

한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가 유지되는 과도기간(제도 존속기간)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 후 3년까지로 규정하였고(협정 제3.1조), 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3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3.3조제5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과도적 조치와 다자 조치의 동시 발동을 금지하였음(협정 제3.6조 제3항).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조치대상으로 포함된 총 7건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03~'23.6)를 발동했고 우리나라의 對필 발동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국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기체결 FTA에서 양자 긴급수

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조치기간은 한-미 FTA²²⁾,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최대 3년으로 규정(2+1)하였음. 이에 비해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캐나다 FTA에서는 최대 4년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한-필리핀 FTA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전 조치가 종료된 지 최소 2년간 동일 품목에 대한 조치의 재발동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달리, RCEP에서는 이전 조치기간 또는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재발동을 금지하였음.

<주요 FTA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비교 >

구분	한·아세안	한·미	한·인도	한·EU	한·베트남	RCEP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재발 동	WTO준용	재발동 금지	WTO준용	관련 규정 없음	재발동 금지	이전 조치 기간 /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WTO준용	이전 조치 기간 동안 재발동 금지 * 비적용 2년	필요시 조치 종료 최소 2년 경과 후 재발동 가능
보상 /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상

22)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HS 8703 또는 8704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품목에 한하여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고, 발동기간은 최대 4년으로 연장되었음.

구분	한· 아세안	한·미	한·인도	한·EU	한· 베트남	RCEP	한· 이스라엘	한· 인도네시아	한· 캄보디아	한· 필리핀
보복	복	복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3년간 보복 불가	복 * 최초 2년간 보복 불가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24개월간 보복 불가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3년간 보복 불가	복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2년간 보복 불가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2년간 보복 불가	복 * 절대적 수입증가 시 최초 24개월간 보복 불가
잠정 조치	200일 이 내	200일 이 내	200일 이 내	200일 이 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18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제도 존속 기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7년간	협정 발효 후 10년 * 관세철폐 기간이 10 년 이상인 품목은 해당 기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10년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10년간	협정 발효 후 10년 * 관세철폐 기간이 10 년 초과인 품목은 해당 기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8 년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5년간	협정 발효 후 10년 * 관세철폐 기간이 10 년 초과인 품목은 해당 기간	관세철폐· 인하 완료 후 3년간	관세철폐· 인하 완 료 후 3 년간

3) 검토의견

필리핀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총 39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국 중 4위 수준임. 2023년 6월 기준 필리핀의 對세계 긴급수입제한조치 누적 발동 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7건에 한국이 조치대상으로 포함되었음.

반면, 한국의 對필리핀 긴급수입제한조치 누적 발동 건수는 0건에 불과하며 특히 한국의 對아세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되는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한-아세안 FTA, RCEP에서는 동 조치의 제도존속기간을 각각 관세철폐·인하 완료 후 7년, 8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필리핀 FTA에서는 동 조치의 제도존속기간을 관세철폐·인하 완료 후

3년까지로 규정함으로써 발동가능한 기간을 보다 짧게 규정하여 그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또한, RCEP에서는 동일품목에 대해 이전 조치 기간 또는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조치의 재발동을 금지하였으나, 한-필리핀 FTA에서는 최소 2년간 동일 품목에 대한 재발동을 금지하여 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달리 한-필리핀 FTA에서는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에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간 인과관계 요건으로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것을 포함하여 동 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하였음.

한편, 한-필리핀간에는 RCEP, 한-아세안, 한-필리핀 FTA가 모두 적용되므로, 위 세 FTA에서 모두 개방된 품목에 대하여는 위 세 FTA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모두 가능하나, 한-필 FTA에서 추가 개방된 품목에는 동 협정상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필리핀측의 해당 조치발동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7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국간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 사안에 대한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Article 3.7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2. The Parties shall ensure, immediately after any imp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nd in any case before the final determination, full and meaningful disclosure of all essential facts and considerations w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 to apply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6.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12.4 of the SCM Agreement. Disclosures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interested parties shall be allowed sufficient time to make their comments. 3. The Partie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actices i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cases between them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a) when dumping margins are established, assessed, or reviewed under Articles 2, 9.3, 9.5, and 1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ardless of the comparison bases under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ll individual margi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should be counted toward the average; (b) if a decision is taken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pursuant to Article 9.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Party taking such a decision may apply the 'lesser duty' rule, b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답변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조사의 목적상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상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	imposing a duty which is less than the dumping margin where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c) the investigating Party shall request an exporter or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the timely response to its questionnaires. When the investigating Party finds major deficiency in information in a questionnaire response from relevant exporter or producer received before the deadline or requires clarifications for the purposes of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Party shall demand missing information or request clarific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s. This procedure shall not be used to cause unwarranted delays in the investigation or to circumvent the deadlines which are provided in the Party'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may make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pursuant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SCM Agreement. Article 3.8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s 1. Upon receipt by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of a properly documented anti-dumping application with respect to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nd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he Party shall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of its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afford the other Party a meeting or other similar opportunit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consistent with the Party's laws and regulations. 2. Upon receipt by a Party's compet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3.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실행 가능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제안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authorities of a properly documented countervailing duty application with respect to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nd befor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he Party shall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of its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afford the other Party a meeting to consult with its competent authorit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Article 3.9 Undertakings 1. After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itiate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Party shall transmit to the other Party's embassy or competent authorities written information regarding the Party's procedures for requesting its authorities to consider an undertaking on price including the timeframes for offering and concluding any such undertaking, if practicable. 2.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here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caused by such dumping, the Party shall afford due consideration an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to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regarding proposed price undertakings which, if accepted, may result in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through the means provided for in the Party'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3.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where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subsidization and injury caused by such subsidization, the Party shall afford due consideration an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10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재심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3.11조	the other Party and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regarding proposed undertakings on price which, if accepted, may result in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through the means provided for in the Party'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ticle 3.10 Investigation after Termination Resulting from a Review The Parties agree to examine, with special care, any application for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a good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and on which anti-dumping measures have been terminated in the previous 12 months as a result of a review. Unless this pre-initiation examination indicates that the circumstances have changed, the investigation shall not proceed. Article 3.11 Committee on Trade Remedie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Trade Reme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rising representatives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relevant agencies of each Party who have responsibility for trade remedies matters, including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issues.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a) enhancing a Party'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other Party's trade remedie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b)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 증진 나. 이 장의 이행 감독 다.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증진 라. 양 당사국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 제공 마. 양 당사국에 다음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 제공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2)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c) improving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having responsibility for matters on trade remedies; (d) providing a forum for the Parties to exchange information on issues relating to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e) providing a forum for the Parties to discuss other relevant topic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i) international issues relating to trade remedies,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the WTO Doha Round Rules negotiations; and (ii) practic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facts available”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f) cooperating on any other matter that the Parties may agree on, as necessary.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may meet more frequently as the Parties may agre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바.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한 협력 3.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한-필리핀 FTA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WTO 협정²³⁾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 제3.7조제1항), 각 당사국은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15일전, 상계관세는 조사개시 전에 신청에 관하여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고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협정 제3.8조).

또한, 각 당사국은 덤핑마진을 계산함에 있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로잉(Zeroing)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협정 제3.7조제3항가호),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협정 제3.7조제3항나호).

한편, 상대국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23) 동조에서는 WTO 협정 중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권리·의무를 말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은 1947년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협정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국이 가입하였으며, 1994년도 GATT 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고, 가격 인상 제의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하는 약속(undertakings)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음(협정 제3.9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한-필리핀 FTA는 기본적으로 GATT 및 WTO 협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제로잉 금지” 관행 준수 및 “최소부과원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WTO 플러스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EU, 한-페루, 한-캐나다 FT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한-인도네시아 CEPA, 한-베트남, 한-터키, 한-호주 FTA에서는 “제로잉금지” 및 “최소부과원칙”을, 한-미 FTA에서는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

한편, 동 협정은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 인상 약속이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약속”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약속”을 통해 기업 및 조사당국은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동 조항은 일부 기체결 협정문(한-캄보디아, 한-베트남, RCEP 등)에 포함되어 있음.

< FTA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비교 >

구분	한·아세안	한·미	한·인도	한·EU	한·베트남	한·중국	RCEP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WTO 협정 권리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WTO 권리 의무 유지
통보	반덤핑	관련 규정 없음	조사 개시 전 서면 통보	조사 개시 10일 전에 통보	조사 개시 15일 전에 통보	조사 개시 15일 전, 서면 통보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보	조사개시 15일 전, 서면 통보	조사개시 15일 전, 서면 통보
	상계관세	관련 규정 없음	조사개시 전 서면 통보	관련 규정 없음	조사개시 전 서면 통보	조사개시 전 서면 통보	조사 20일 전 서면 통보	조사개시 전 서면 통보	조사개시 전 서면 통보
협 의	반덤핑	관련 규정 없음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유사 기회 부여	관련 규정 없음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유사 기회 부여	조사개시 7일 전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유사 기회 부여	조사개시 7일 전 협의 기회 부여	관련 규정 없음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유사 기회 부여
	상계관세	관련 규정 없음	신청에 관하여 유사 기회 부여	관련 규정 없음	조사개시 전 협의 기회 부여	조사 개시 전 협의 기회 부여	조사 20일 전 협의 기회 부여	조사 개시 전 협의 기회 부여	조사 개시 전 협의 기회 부여
Zeroing 금지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관련 규정 없음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Zeroing 금지 조항 포함
최소부과 원칙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덤핑마진 보다 낮은 관세 부과 (shall)	덤핑마진 보다 낮은 관세 부과 (should)	덤핑마진 보다 낮은 관세 부과 가능 (may)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덤핑마진 보다 낮은 관세 부과 가능 (may)	덤핑마진 보다 낮은 관세 부과 가능 (may)
가격약속	관련 규정 없음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절차 정보 전달 및 협의 기회 부여

3) 검토의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의 경우 원칙상 모든 품목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산품에 대한 조치가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이 공산품이므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음. 과거 통상 분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WTO에 제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국의 우리 기업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와 관련된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발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동 협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규정을 보면, 제로잉 금지 및 최소부과원칙²⁴⁾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정상대국 정부의 각종 수입 규제 조치 발동을 어렵게 하였으며,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의무 부과, 결정 전 설명 제공을 권고하는 규정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확대하였음. 이를 통해 협정상대국과의 자유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4) WTO 협정은 최소부과원칙과 관련하여,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it is desirable)' 규정하고 있으며, 한-필리핀 FT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may apply)'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인도 FTA, 한-EU FTA 등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shall/should apply)'로 규정하여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고 있음.

5. 소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기준으로 필리핀은 한국이 조치 대상으로 포함된 7건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해왔으며, 對세계 누적 발동 건수 기준 총 39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국 중 4위 수준의 국가임. 따라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서 동 조치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한-필리핀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은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동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동을 제한하는 최소기간을 RCEP에 비해 길게 규정하며, 제도존속기간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 후 3년까지로 RCEP에 비해 짧게 규정하는 등 발동요건 등을 엄격하게 하여 시장 자유화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는 주로 공산품에 대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발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동 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제로잉 금지 및 최소부과 원칙,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의무 부과 규정 등을 도입하

여 협정상대국 정부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어렵게 함으로써 해당국
과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제4장 원산지 규정

제1절 원산지 규정

1. 개 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규정·판례·행정적 절차를 총칭함.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국간 교역되는 상품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규정을 의미함.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서 FTA 체결국간 교역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는 중립적 원칙이어야 하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 부문별 경쟁력 및 원산지 충족 여건 등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규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교역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를 고려할 때, 자국의 산업 환경에 맞는 FTA 원산지 규정 채택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측에 유리하지만, 상대방 국가와의 공정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²⁵⁾,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원산지 결정 기준의 예 >

구 분		개념/특징	적용 예
완전 생산 기준		-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거의 모든 FTA원산지 규정에서 채택 - 생산활동이 글로벌한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에 한계	- 당사국에서 생산된 광물, 농산물, 식물 - 당사국의 살아있는 동물과 이로부터 채취된 상품
실질 변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 코드)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HS 품목분류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	- HS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in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in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in Tariff Sub Heading)은 완화된 기준 -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한 경우 :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한국산 인정 * 6단위 변경(O) : 9613.90 → 9613.10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한국산 불인정 * 4단위 변경(x) : 9613 → 9613
	부가 가치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민감하다는 단점	- 부가가치비율 계산방식은 공제법과 집적법 등으로 구분 : (공제법)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법 (집적법) 원산지 재료 가치를 누적하여 계산하는 방법
	특정 공정 기준	-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가장 객관적인 기준임.	- 의류는 재단 및 봉제를 수행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25)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수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HS code)와 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2. 협정문의 구성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4장(원산지 규정)은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실체적인 원산지 규정을 다루고,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원산지 규정 외에도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4-나)과 역외가공위원회(부속서 4-다)와 관련된 별도 부속서 2개도 체결되었음.

우선 협정문 본문의 원산지 규정은 한-필리핀 FTA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된 원산지 결정 기준들이 반영되어 있음. 이외에도 중간재·중립재·누적 등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원칙들도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음.

한-필리핀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규정한 것임.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일반 원칙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들을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우리나라가 민감성이 있는 육류·낙농품 등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원산지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였음. 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은 완전생산 외에 보다 유연한 기준

들을 규정하여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부속서 4-다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과 관련된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개성공단이 추후 재가동될 경우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도 한-필리핀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① 완전생산 기준 중 산 동물로부터 획득되는 부산품에 대해 출생 및 사육 조건을 모두 부과할 것, ②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규정은 한-아세안 FTA를 준용할 것을 주장함.

① 출생 및 사육 요건이란 필리핀에서 도축된 소로부터 얻은 육류의 원산지 판정시, 도축된 소가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제3국에서 필리핀측으로 수입된 소를 도축해서 얻은 육류의 원산지는 필리핀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② 또한 우리 정부는 한-ASEAN FTA에서 필리핀측이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나. 필리핀측 입장

필리핀측은 ① 산 동물의 부산품에 대해 출생 요건을 삭제하고 사육 요건만 부과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필리핀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② 한국의 개성공단만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것은 상호호혜적이지 않고 한-ASEAN FTA상의 품목에 민감품목(섬유·의류)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항 포함에 반대함.

다. 협상 결과

우리측은 ① 산 동물의 부산품에 대해 사육 요건이 필리핀측 관련 산업에 영향이 적을 것임을 주장하여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였음. ② 역외가공 관련, 필리핀측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개성공단만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화된 규정으로 합의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원산지 일반 기준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4.2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의 경우 가. 제4.3조에 따라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4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는 다.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4.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Article 4.2 Origin Criteria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good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Party if they have been: (a)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b)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a Party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s provided the goods satisfy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4-B; or (c)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a Party exclusively from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Parties and meet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rticle 4.3 Wholly Obtained or Produced Goods For purposes of Article 4.2(a), the following goods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 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in that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그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b)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at Party; (c) goods obtained from live anim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 (생략)
제4.5조 최소허용수준	Article 4.5 De Minimis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1. Goods that do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a) for good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s; (b) for goods provid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goods; and the good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and (b) meet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originating goods. 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VC requirement for the goods.
제4.6조 최소 공정	Article 4.6 Minimal Operations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다음의 공정이나 가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pter, goods shall not be considered a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공이 한번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 그리고 포장물의 재포장과 해체 및 조립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originating in a Party if they have undergone only one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good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b) packaging and re-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c) simple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 (생략)
제4.7조 원산지 누적	Article 4.7 Accumulation of Origin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good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materials for finished goods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s has taken place.
제4.8조 특정 상품의 취급	Article 4.8 Treatment for Certain Goods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쪽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양 당사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다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4.2, certain goods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even if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outside the Parties, on materials exported from a Party and subsequently re-imported there,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is done in the areas designat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Annex 4-C.
제4.9조	Article 4.9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4.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언급된 상품의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Intermediate Goods When originating goods are used in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other goods,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ontained in the originating good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subsequently produced goods. Article 4.10 Treatment of Packaging and Packing Materials 1. (a) If the goods are subject to the RVC criterion as set out in Article 4.4, the value of the packaging and packing materials for retail sal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here the packaging and packing materials are considered to be taken as a whole with the goods. (b) Where subparagraph (a) is not applicable, the packaging and packing materials for retail sale, when classified together with the packaged good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considering whether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fulfil the criterion corresponding t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a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of the said goods. 2.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ransportation of good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제4.11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Article 4.11 Sets 1. Sets, as defined in Rule 3 of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when all the components of the sets are originat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3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및 재료 제4.14조 대체가능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이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한다. 제4.15조	2. Nevertheless, when a set is composed of originating and non-originating goods, the set as a whole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good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set. Article 4.13 Neutral Elem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goods are originating,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following which might be used in its production and not incorporated into the goods: (a) fuel and energy; (b) tools, dies, and moulds; (c) spare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 (생략) Article 4.14 Fungible Materials 1.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the origin of goods, when the goods are manufactured utilizing originating and non-originating materials, mixed or physically combined, the origin of such materials can be determined by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inventory management practi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2. Once an inventory management method has been chosen, it must be used throughout the fiscal year. Article 4.15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 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 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 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 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 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 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 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 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 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 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Direct Consignment 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goods which involve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b)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c)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3.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paragraph 2,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hich include a combination of any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entire transport route of the goods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or (b)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are being complied with.

한-필리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교역되는 ①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거나, ②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실질변형이 발생하여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조건이 충족되거나, ③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함(협정 제4.2조).

완전생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은 역내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천연자원, 역내 재배·수확·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성 제품, 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이나 그러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등이 존재함(협정 제4.3조).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쪽 당사국의 재료가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그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누적 조항을 도입함(협정 제4.7조).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선인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²⁶⁾)을 도입함. 섬유 및 의류(HS 50~63류)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함(협정 제4.5조).

26)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확립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대부분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 변형 기준은 품목별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이들의 조합)을 적용함.

< 원산지 결정 기준의 유형 >

구 분	완전생산 기 준	실질적 변형기준			보충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미소기준	누적 원칙	역외가공
한-필리핀	적 용	대부분 CTH ²⁷⁾ 또는 RVC 40%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 캄보디아	적 용	대부분 CTH 또는 RVC 40%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인니	적 용	CTH 또는 RVC 40%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베트 남	적 용	CTH 또는 RVC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호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콜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페루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EU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 28)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인도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칠레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가격의 8%	적 용	-
한·싱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관세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EFTA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ASEA N	적 용	CTH 또는 RVC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미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27) CTH(Change in Tariff Heading)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4단위(heading)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28) 공장도 가격(Ex Work)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

＜ FTA별 부가가치비율 계산법 ＞

구분	계산법	부가가치 기준	기준가격	비고
한·필리핀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캄보디아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	FOB	-
한-인니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45%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베트남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호	집적법	30-40%	조정가격	완성차에 대해서는 집적법(30%)/공제법(40%) 중 선택 가능
	공제법	40%		
한·콜	집적법	30-35%	조정가격	완성차에 대해서는 공제법/집적법과 순원가법(35%) 중 선택 가능
	공제법	40-45%		
한·페루	집적법	35%	FOB	대부분 공제법을 사용 일부 품목에 한하여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공제법	40-55%		
한·칠레	집적법	30%	조정가격	혼합주스는 공제법 80% 이상
	공제법	45%		
한·싱가포르	공제법	45-55%	관세가격	-
한·EFTA	비원산지재료 비율 계산	25-6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한·ASEAN	집적법 또는 공제법	35-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가 선택 가능(우리는 공제법 선택)
한·인도	공제법	25~50%	FOB	CTSH+RVC 35%를 일반기준으로 도입
한·EU	비원산지재료 비율 계산	25~5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한·미	집적법	30-40%	조정가격	자동차에 한하여 순원가법도 선택 가능
	공제법	35-55%		

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함.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함.

3) 검토의견

누적 조항을 통해 한쪽 당사국의 재료가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그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되는바, 이는 양국간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최소허용수준을 도입하여 원산지의 포괄적인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양국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나.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정 부속서 4-가)

1) 협정문의 내용

부속서 4-가에서 HS 품목분류번호 챗터별로 일반 원칙(CTH 또는 RVC 40%)을 반영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 특성 및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 주요 공산품 원산지 기준 >

품목	HS류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 승용차, 화물차 등의 완성차 RVC 45% 적용 - 단,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CTH 또는 RVC 40% 적용
전기전자	85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등은 CTH 또는 RVC 40% 적용
기계	84	선박·항공용 엔진, 냉장고, 세탁기 등은 CTH 또는 RVC 40% 적용
섬유 및 의류	50-60	섬유 원료(fiber)는 CC 또는 RVC 40% 적용, 사(yarn)·직물(fabric)은 CTH 또는 RVC 40% 적용
	61-63	의류는 대체적으로 CC 또는 RVC 40% 적용(재활용 의류는 완전생산기준)
철강/철강제품	72-73	대부분 CTH 또는 RVC 40% 적용, 단 평판압연제품(제7209호)은 CTH
비철금속	74-81	-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등은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구리선은 CTH(제7407호의 것 제외) 또는 RVC 40%, 알루미늄선은 CTH(제7604호의 것 제외) 또는 RVC 40% 적용 등 일부 예외 존재
화학	27	석유, 석탄 등 광물성 연료는 CTH 또는 RVC 40% 적용
	28-38	무기·유기화학품, 의약품, 비료 등은 CTH 또는 RVC 40% 적용
	39-40	플라스틱 제품 및 고무제품은 CTH 또는 RVC 40% 적용

* RVC :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 세 번변경기준

공산품과 관련하여 기계·전자기기 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부분품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함.

완성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도입 시 단순 조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단일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되,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함.

< 주요 농산물 원산지 기준 >

품목	HS류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등은 완전생산기준(WO) 적용. - 단, 가공한 곡물(제1104호)은 RVC40 또는 CC, 커피는 RVC 45% 또는 CTSH, 일부 후추·계피 제품 등은 RVC 40% 등 일부 예외 존재
축산물	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완전생산기준(WO) 적용
	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등은 완전생산기준(WO) 적용
수산물	3	어류, 갑각류(새우, 게 등), 연체동물(문어, 굴 등) 등은 완전생산기준(WO) 적용
가공 농·수산물	15-24	대부분 CC 또는 RVC 40%, CTH 또는 RVC 40% 기준을 도입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완전생산기준을 사용하고, 자동차와 섬유·의류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사용함.

< 기체결 FTA 주요품목 PSR 비교 >

구 분	신선농산물 (HS 1-14)	자동차 (HS 87)	섬유 (HS 50-60)	의류 (HS 61-63)
한·필리핀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완성차는 RVC 45% (직접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부품은 CTH or RVC 40% 이상(직접법 또는 공제법)	CTH or RVC 40% 이상 또는 CC or RVC 40% 이상	CC or RVC 40% 이상
한·캄보디아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완성차는 RVC 45% (직접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부품은 CTH or RVC 40% 이상(직접법 또는 공제법)	CTH or RVC 40% 이상 또는 CC or RVC 40% 이상	CC or RVC 40% 이상
한·인니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완성차는 RVC 40% (집적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부품은 주로 CTH 또는 RVC/QVC 40%(집적 법 또는 공제법)	CC 또는 CTH 단독기준 을 적용	CC 또는 CTH 단독기 준을 적용(한-아세안 의 추가적인 공정요건 을 삭제)
한·베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완성차는 RVC 45%(집적 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40%(집적법 또는 공 제법)	RVC 40% or CC 또는 CTH (또는 둘 이상의 예비/ 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	RVC 40% or CC + 재단 및 봉제 - 62류, 63류 중 일부 품목 완화
한·호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승용차는 CTH+RVC 30%(집적 법)/40%(공제법) 이상, 그 외 완성차는 CTH+RVC 40%(집 적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부품은 RVC 30% (집적법)/40%(공제법)이거나 RVC 40%(집적법 또는 공 제법)	CTH 기준 -직물의 경우 염색·날염 공정의 선택적 인정	CC 기준 -직물의 경우 염색·날염 공정의 선택적 인정
한·콜	완전생산기준	-완성차는 RVC 35%(직접 법)/45%(공제법)/35%(원가법) 이상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45%(공제법)	원사기준 또는 CC(CTH)	CC + 재단 및 봉제
한·페루	완전생산기준	-완성차는 RVC 35%(직접 법)/45%(공제법) 이상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35%(집적법) / 45% (공제법)	CTH/CC	원사기준 및 염색/날 염 공정 인정
한·EU	완전생산기준	CTH or RVC 50~55% 이상	CTH 등 품목별 상이	직물기준 (fabric forward)
한·싱	2단위 세번 변경 (CC) * 예외존재	CTH + RVC 50~55% * CTH, CTSH + RVC 50% 도 존재	CC 또는 CTH	CC + 재단 및 봉제

한-EFTA	완전생산기준	CTH or RVC 40% 이상	CTH or 둘 이상의 예비/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단 옷감의 가치가 생산품의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일 것) * CC, CTH도 존재	CC + 재단 및 봉제
한-ASEAN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RVC 45% 이상	RVC 40% or CC 또는 CTH (또는 둘 이상의 예비/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	RVC 40% or CC + 재단 및 · 봉제
한·미	CC * 예외존재	RVC 55%*/35%**이상 * 공제법 * * 순원가법/집적법	원사기준(yarn forward) * 예외존재	원사기준(yarn forward) * 예외존재
한·인도	완전생산기준	CTH + RVC 40%	RVC 40% + CTH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 한-ASEAN FTA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① 역내부가가치 40%이상 또는(or) ② 4단위 세번변경이라는 일반기준을 도입
- ** 한-인도 FTA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① 역내부가가치 40%이상 그리고(and) ② 6단위 세번변경이라는 일반기준을 도입

3) 검토의견

한-필리핀 FTA에서는 품목별 특성, 해외 원자재 조달 비율, 업계별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 보임.

완성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소 엄격하게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생산된 품목이 쉽게 원산지 인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업계의 요구 사항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 개성공단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4.8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쪽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양 당사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다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 4-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역외가공지역의 필요성 검토 나.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기초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결정 다.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수립, 그리고 라.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상품 목록 및 구체적인 절차 작성	Article 4.8 Treatment for Certain Goods Notwithstanding Article 4.2, certain goods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even if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outside the Parties, on materials exported from a Party and subsequently re-imported there,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is done in the areas designat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Annex 4-C. ANNEX 4-C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a) review the necessity of outward processing zones; (b) identify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as outward processing zones, based on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 (c) establish criteria to determine the originating status in outward processing zones, including the maximum threshold for the value of the total input of the originating final good; and (d) form the list of goods and the specific procedures related to outward process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1. 양 당사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약속에 따라, 위원회는 한반도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zones.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officials of the Parties. The Committee shall meet within a yea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t least once a year thereafter, or at any time as mutually agreed. 1. With the Parties'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al mandate and security interests, and commitment to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dentify geographical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as outward processing zones.

양국은 개성공단과 같이 FTA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에 합의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에서 개성공단 조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OPZ 위원회)를 규정하여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을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위원회 구성방식)과 일정 품목을 열거하고, 해당 상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외지역에서 가공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에서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품목 리스트 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한-필 FTA는 위원회 구성방식으로서, 필리핀측 요청으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합의되었음. 다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음.

< FTA별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비교 >

	한·필리핀	한·캄보디아	한·인나	한·베트남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미/한·EU	한·페루	한·콜롬비아
적용방식	위원회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위원회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적용조건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 내용을 결정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 내용을 결정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적용품목수		100개 (HS6단위)	100개 (HS6단위)	100개 (HS6단위)	267개 (HS6단위)	100개 (HS6단위) (ASEAN 각 국별로 100개씩 선정)	108개 (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인도 최종 선정)		100개 (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페루 최종 선정)	100개 (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콜롬비아 최종 선정)
참고사항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캄보디아의	한-아세안을 준용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베트남의	적용대상으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시범단지 15개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의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의 우려를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지역도 OPZ로 선정이 가능토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페루의 우려를	콜롬비아 국내산업 피해의 우려를 반영, 부속서

	한·필리핀	한·캄보디아	한-인니	한·베트남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미/한·EU	한·페루	한·콜롬비아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등 규정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등 규정	업체의 생산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적시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반영, 한·아세안 FTA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록 하여, 남포, 신의주 등 제2, 제3의 남북경제특구 건설의 중요한 전기 마련	반영, 부속서 목록 수정, 부속서 잠정 적용정지,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목록 수정, 부속서 잠정 적용정지 가능성 등 규정

3) 검토의견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제2절 원산지 절차

1. 개 요

FTA 제도에서 해당 수출물품이 특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함. 원산지 증명 방식에는 “기관증명제”와 “자율증명제”가 있음.

기관증명제란 정부기관이나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반면 자율증명제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입 통관에 사용하는 방식임. 기관증명제는 세관 등의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공신력은 있으나 시간과 비용 및 절차 면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자율증명제는 절차와 비용측면에서 수출업자에게 편리하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아울러,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우회수입이나 원산지 위조 등을 통한 부당한 특혜관세 수혜를 방지함. 원산지 검증제도는 검증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직접검증방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방식”이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원산지 절차 관련 내용은 부속서(부속서 4-가, 부록 4-가-1, 부록 4-가-2)로 구성되어 있음. 부속서는 원산지 증명방식,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인증수출자, 원산지 검증방식 등을 다루고 있고, 부록은 최소정보요건, 원산지 증명서 서식 등을 다루고 있음.

원산지 증명방식으로는 기관증명 또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은 발효일 후 즉시,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은 발효일 후 10년내 이행하는 순차적 도입을 채택함(협정 부속서 4-가 규칙 2).

특혜관세대우 신청 관련, 수입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의 관세 가격이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을 면제하도록 함(협정 부속서 4-가 규칙 13).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는 서면검증(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식 뿐만 아니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검증 방식을 도입하되, 순서에 따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협정 부속서 4-가 규칙 15).

3. 주요 협상경과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절차와 비용측면에서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필리핀 측은 자율증명을 실제로 도입해 본 경험이 부족해 현재 시점에서 전면 자율증명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따라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은 발효일 후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합의함.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2).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동 조항은 중소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임을 설명하였고, 필리핀 측은 자국법상 수입신고 시점에 특혜관세 적용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사후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그 결과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도는 도입은 하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협정 부속서 4-가 규칙 12).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원산지 증명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규칙 2 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가.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원산지 증명서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행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이행된다.	Rule 2 Proof of Origin 1. The Proof of Origin may be in the form of: (a) Certificate of Origin (Form KR-PH) issued by an issuing body; (b) Origin Declaration made out by an approved exporter; or (c) Origin Declaration made out by an exporter or producer. 2. The Parties shall implement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approved exporter regimes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he Origin Declaration by exporter or producer shall be implemented no later than 10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규칙 11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제4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내용의 작성 시 규칙 2 제1항나호 또는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4.15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다	Rule 11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Chapter 4, each Party shall require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that claim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a) make a declaration in the customs declaration that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b) have in its possession the valid Proof of Origin referred to in Rule 2.1(b) or Rule 2.1(c) at the time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made; (c) have in its possession the documents which certify that the requiremen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2. 수입자가 내용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내용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관세가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한다. 규칙 12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수입일부터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내에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 및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established in Article 4.15 have been met, where applicable; and (d) submit the valid Proof of Origin, as well as docu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to the customs authority, when it is required. 2. Where an importer has a reason to believe that a Proof of Origin on which a statement was based contained incorrect information, the importer shall make a corrected statement and pay, if any, customs duty owed. Rule 12 Post-Importation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1. An impor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originating goods were imported into its territory, an importer may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apply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ies pai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mportation, or such longer period as specifi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upon presentation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of the following: (a) a Proof of Origin and other evidence that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and (b) such other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s as the customs authority may require to satisfactorily prove the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each Party may requir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 importer, at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칙 13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가.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또는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 증명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time of importation, indicate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its intention to clai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ule 13 Waiver of Proof of Origin A Proof of Origin shall not be required for: (a) good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does not exceed US\$ 200 FOB; or (b) goods sent by post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does not exceed US\$ 200 FOB,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does not form part of one or more importations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taken or arranged for purposes of avoiding the submission of a Proof of Origin.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음(규칙 2).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규칙 11).

수입 당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 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시에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음(규칙 12).

상품의 총 가치가 미화 2백불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원산지 증명 면제됨.(규칙 13).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원산지 증명방식과 관련하여, 한-필리핀 FTA는 최근 타결된 한-인니 FTA, RCEP와 같이 다양한 방식(기관증명방식, 인증수출자 증명방식,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였음.

< 주요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한·중국	한·베	한·콜	한·중미	한·인니	한· 이스라엘	RCEP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자율증명

3) 검토의견

협상 결과,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증명방식,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방식을 모두 포함하였음. 다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방식은 발효일 후 10년 내 순차적 도입 하도록 합의하였는바, 정부는 향후 유예기간 종료 후 양국 간 자율증명방식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원산지 검증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규칙 15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순서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 요청,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양 당사국은 그 밖의 향후 절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검증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를 회신해야 하는 기한은 그 접수일로부터 1개월 또는 양	Rule 15 Verific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good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qualify as originating,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conduct a verification in the following order: (a) written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importer; (b) written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c) written requests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o verify the origin of the goods; and (d) verification visits to the premises of an exporter or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he Parties may agree to any other procedures in the future, which may be conducted at any stage of the verification process. 2. For purposes of paragraph 1(a) and paragraph 1(b): a) the written request for information made by the importing Party will indicate that the time period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has to return the information an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될 것임이 적시될 것이다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수령하였고 검증 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관세 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면 통보를 최소 1개월 간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요청의 수령부터 6개월 내의 현재 원가 및 가격을 기초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나.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검증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을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documentation required will be one month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or for a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b) when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has received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pursuant to paragraphs 1(a) and paragraph 1(b), and considers that it needs more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and (c) where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e importing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s in question after providing at least one month written notice to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provide written comments or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be taken into account prior to completing the verification. 3. Wher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requests assistance under paragraph 1(c): (a)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shall conduct a verification on a producer or exporter's cost statement based on the current cost and prices, within a six-month timeframe from receipt of the request; (b) the request for verif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Proof of Origin concerned and shall specify the reasons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suggesting that the particulars given on the said Proof of Origin may b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검증 요청을 수령한 관세 당국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 요청의 접수 후 3개월 내에 회신한다.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 관세 당국이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하게 전달하면,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완료된다.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라호가 적용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수입 당사국은 제안된 검증방문 전, 가호에 언급된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inaccurate, unless the verification is requested on a random basis; (c) the customs authority receiving a request for verification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promptly and repl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d)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suspend the provisions 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hile awaiting the result of verification. However, it may release the goods to the importer subject to any administrative measures deemed necessary, provided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im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and there is no suspicion of fraud; and (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promptly transmi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process to the impor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subject goods are originating. The entire process of verification including the process of notifying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he result of determination whether or not the goods are originating shall be completed within six months. While awaiting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subparagraph 4. Wher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intends to conduct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d): (a) ~ (b)(생략) (c) The importing Party shall obtain a written consent of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prior to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라.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마. 통보를 수령한 관세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 수령일 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 도 불구하고, 그 방문은 그러한 통보 수령일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행된다. 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방문의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관세 당국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아.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호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의 수령에 따라 복원된다. 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결정서의 수령 후 1개월 내에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 서면 결정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그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후 1개월 내	(d) When a written consent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is not obtained within one month upo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a), the notifying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of the verification visit. (e) The customs authority receiving the notification may postpone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and notify the importing Party of such inten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Notwithstanding the postponement of the verification visit, it shall be carried out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receipt, or for a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shall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the verification visit. (g) The Party conducting the verification visit shall provide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goods are the subject of the verification and the customs authority with a written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subject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h) Any suspend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reinstated upon receipt of the written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g) that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i) The exporter or producer will be allowed one month, from receipt of the written determination, to provide in writing comments 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the goods. If the goods are still found to be non-originating, the final written determina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customs authority within one month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에 관세 당국에 통지될 것이다. 차. 실제 방문 및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및 그 결과의 관세 당국으로의 통지는 최대 6개월 내에 수행된다. 검증방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정지에 관한 제3항라호가 적용된다.	from receipt of the comments o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j) The verification visit process, including the actual visit and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subject goods are originating or not, shall be carried out and its results communicated to the customs authority within a maximum of six months. While awaiting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visit, paragraph 3(d) on the 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서면검증, 간접검증(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 방문검증(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 방식을 도입하였음. 또한, 검증 요청에 따른 회신 기한과 방문 대상 사업장의 동의 등 검증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수입의 특혜관세대우 거부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규칙 15).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리핀 FTA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한-이스라엘, RCEP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규정함.

주요 FTA별 원산지 검증 방식은 간접검증을 우선하되 필요시 수입국이 방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한-중국, 한-베트남, 한-인도

네시아, 한-이스라엘 FTA, RCEP)와 간접검증과 방문검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한-콜롬비아, 한-중미 FTA)로 구분됨.

< 주요 FTA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한·중국	한·베	한·콜	한·중미	한·인니	한·이스라엘	RCEP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방문검증	간접검증,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3) 검토의견

우리 정부는 기체결 FTA에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한 바가 있음. 아울러 원산지 증명 방식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산지 검증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필리핀 FTA는 원산지 검증방식으로 서면검증 및 간접 검증, 방문 검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 수행 후 수출자·생산자의 제조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문 검증을 수행토록 하여 간접 검증의 부실조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제5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 개 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는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양측 관세당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원활한 관세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품의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2. 협정문의 구성

협정문 제5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은 21개의 조문(제5.1조~제5.21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용 및 관세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해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며, 무역원활화와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등을 이 장의 목적으로 함(협정 제5.2조).

동 협정에서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 상품 여부 등에 대해 수입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결정을 규정하고(협정 제5.10조),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였음(협정 제5.11조).

또한,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및 불복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관세 협력을 규정하였으며(협정 제5.18조 및 제5.19조),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해석, 적용, 운영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함(협정 제5.21조).

3. 주요 협상경과

우리 측이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은 통관절차에서 무역원활화 제고와 효율적인 자유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여, 상품의 신속한 반출, 재심사 및 불복청구, 관세 협력 등을 규정하는데 큰 이견 없이 합의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세계 및 역내 공급망을 위한 강화된 환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Article 5.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a) ensure predictabilit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b) promot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customs procedures and the expeditious clearance of goods; (c) simplify customs procedures of the Parties and harmonize them to the extent possibl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d) promote cooperation among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e)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through a strengthened environment for global and regional supply chains.
제5.10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이 협정상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	Article 5.10 Advance Rulings 1.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determinations,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from a Party into its territory, issue a written advance ruling to an importer, ex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or a representative thereof, who has submitted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with regard to: (a) tariff classification; (b)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i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다.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생략)	accordance with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under this Agreement; (c)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d) such other matters as the Parties may decide.. ...(생략)
제5.11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에게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통관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에 상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생략)	Article 5.11 Release of Good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for the efficient release of good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This paragraph shall not require a Party to release a good if its requirements for release have not been met. 2.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hat allow the goods to be cleared from customs within a period no long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the extent possible, within 48 hours of the arrival of goods and lodgment of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customs clearance. ... (생략)
제5.16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	Article 5.16 Post-clearance Audit 1.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ost-clearance audit to ensur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와 그 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 Each Party shall select a person or a consignment for post-clearance audit in a risk-based manner,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Each Party shall conduct post-clearance audits in a transparent manner. Where the person is involved in the audit process and conclus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Part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se record is audited of the results, the person'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reasons for the results. 3.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in post-clearance audit may be used in fur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4. The Parties shall, wherever practicable, use the result of post-clearance audit in applying risk management.

동 협정은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해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간소화, 관세 당국 간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협정 제5.2조).

양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등에게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상품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결정을 규정하는 한편(협정 제5.10조),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협정 제5.11조) 및 사후심사(협정 제5.16조)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 한-EU FTA, RCEP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도 한-필리핀 FTA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교역 물품이 간소한 통관절차를 통해 신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도입하였고,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결정 조항을 도입하였음.

나. 불복 절차 및 관세협력 강화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18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행정 결정⁵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에 의한 재심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2. 당사국의 법률은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가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전에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생략) ----- 5. (생략)	Article 5.18 Review and Appeal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to whom its customs authority issues an administrative decision⁵ has the right, within its territory, to: (a) an administrative appeal to or review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igher than or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office that issued the decision; and (b) a judicial appeal or review of the decision. 2. The legislation of a Party may require that an administrative appeal or review be initiated prior to a judicial appeal or review. ... (생략) ----- 5. (생략)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19조 관세협력 1.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행정적 변경, 법이나 규정의 수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과 관련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시의 적절한 통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 통지는 영어나 그 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3.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각 당사국에서 수입 및 수출 통관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Article 5.19 Customs Cooperation 1. The customs authority of each Party may, as deemed appropriate, assist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a)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b)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ustoms best practice and risk management techniques; (c) simplifying and harmonizing customs procedures; (d) applic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e) application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 such other customs issues as the Parties may mutually determine. 2.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timely notice of any significant administrative change, modification of a law or regulation, or similar measure related to its laws or regulations that govern importations or exportations, that is likely to substantiall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Chapter. The notice can be made in English or the Party's language. 3. The customs authority of a Party may, as deemed appropriate, share with the other Party,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actively cooperate to resolv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다. 제5.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관련 정부 당국⁷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 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4장(원산지 규정)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와 국가 상품분류체계의 전환에 근거한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다.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생략) ----- 7. (생략)	difficulties arising during the import and export clearance in each Party. Article 5.21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⁷ of the Parties.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addressing rules of origin, origin procedures,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matters. 2.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is Chapter and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3.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a) ensuring the effective, uniform, and consistent administration of this Chapter and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b) revising Annex 4-B (Product Specific Rules) on the basis of the transposition of the HS and national nomenclatures; (c) adopting customs practices and standards which facilitate commercial exchange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생략) ----- 7. (생략)

동 협정은 관세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 및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협정 제5.18조). 또한, 양 당사국은 통관 사안에 대해 서로 지원하고,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협정 제5.19조),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등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5.21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 FTA, RCEP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도 양국간 관세 사안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였고, 재심사 및 불복청구 조항을 도입한 바 있음.

5. 검토의견

한-필리핀 FTA에서는 관세 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협력을 통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기술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원활한 협정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6장 경쟁

1. 개 요

FTA 체결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당사국이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 및 이행하고, 경쟁법 이행에 있어 협력할 것을 규정함.

2. 협정문의 구성

경쟁 챕터는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의(협정 제6.1조), 목적(협정 제6.2조), 기본 원칙(협정 제6.3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협정 제6.4조), 협력(협정 제6.5조), 정보의 비밀유지(협정 제6.6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협정 제6.7조), 분쟁해결의 비적용(협정 제6.8조), 협의(협정 제6.9조), 소비자 보호(협정 제6.10조), 공기업(협정 제6.11조) 등임.

3. 주요 협상경과

우리측은 RCEP 경쟁 챕터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필리핀 측에서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4차 협상에서 타결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들 의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소비자법」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제6.2조 목적 이 장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 의 유지를 통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경 쟁법의 발전과 이행에 관한 양자 협력을 통	Article 6.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ompetition authority means: (a) for Ko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r its successor; and (b) for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or its successor. Competition laws means: (a) for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any amendments thereto; and (b) for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Competition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any amendments thereto; Consumer protection law means: (a) for Korea,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the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heir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any amendments thereto; and (b) for the Philippines,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any amendments thereto. Article 6.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promote competition in markets, and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6.3조 기본 원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이행한다. 2.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개발, 수립, 관리 및 집행할 주권적 권리, 그리고 나. 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존재하는 역량과 발전 수준의 중대한 차이	welfare through the maintenance of competition laws to proscribe anti-competitive activities, and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3: Basic Principles 1. Each Party shall implement this Chapte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2. Acknowledging each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recognize: (a) the sovereign rights of each Party to develop, set, administer and enforce its own competition laws and competition policies; and (b)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the Parties in capacity and level of development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제6.4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고 그러한 경쟁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Article 6.4: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Anti-competitive Activities 1. Each Party shall maintain competition laws to proscribe anti-competitive activities, and shall enforce those competition laws accordingly. 2. Each Party shall maintain an authority or authorities to effectively implement its competition laws. 3. Each Party shall ensure independence in decision-making by its authority 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 6.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국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위 가호1)목부터 3)목까지의 어떠한 사유에 기초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its competition laws. 4. Each Party shall apply and enforce its competition laws in a manner which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nationality. 5. Each Party shall apply its competition laws to all persons or entitie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ny exclusions or exem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each Party's competition laws shall be transparent and based on grounds of public policy or public interest. 6.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ts competition laws, and any guidelines issued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competition laws, excluding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7. Each Party shall make public the grounds for any final decision or order to impose a sanction or remedy under its competition laws, and any appeal therefrom subject to: (a) (i) its laws and regulations; (ii) its need to safeguard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ii) its need to safeguard information on grounds of public policy or public interest; and (b) redactions from the final decision or order based on any of the grounds in subparagraphs (a)(i) through (iii) above. 8.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before a sanction or remedy is imposed on any person or entity for the violation of i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능한 경우 서면으로)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각주) 그러한 행위의 예는 가) 반경쟁적 합의,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	competition laws, such person or entity is given the reasons in writing, where possible, for the allegations that its competition laws have been violated, and a fair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present evidence. 9. Each Party shall, subject to any redactions necessary to safeguard confidential information, make the grounds for any final decision or order to impose a sanction or remedy under its competition laws available to the person or entity subject to that sanction or remedy. 10.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or entity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 sanction or remedy under its competition laws has access to an independent review of or appeal against that sanction or remedy. 11. Each Par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imeliness in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ases. (footnote 1) Examples of such activities may include: a) anti-competitive agreements; b) abuses of dominant position; and c) anti-competitive mergers and acquisitions.
제6.5조 협력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들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Article 6.5 Cooperation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competition authorities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o this end, the Parties may cooperate on issues relating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rough their competition authorities,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important interests, and within their available resources. Such cooperation includ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 나.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논의하는 것 다. 요청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라.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a) notification by a Party to the other Party of it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at it considers may substantiall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s promptly and reasonably as possible; (b) upon request, discussion between the Parties to address any matter relating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at substantially affects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c) upon reques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to foster understanding or to facilitate effectiv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d) upon request, coordination in enforcement actions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same or related anti-competitive activities.
제6.6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장은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요청의 목적, 그리고 나. 요청한 정보의 사용 목적 3. 양 당사국 간 비밀 정보의 공유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다.	Article 6.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This Chapter shall not require the sharing of information by a Party which is contrary to that Party's laws, regulations, and important interests. 2. Where a Party requests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Chapter,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a)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b) the intended use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3. The sharing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use of such information shall be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은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 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인 또는 실체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4. If information shared under this Chapter is shared on a confidential basis, then, the Party receiving that information shall: (a)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b) use it only for the purpose disclosed at the time of the request,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c) not use it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carried out by a court or a judge unless, upon request of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was provided for such use i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other channel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both Parties; (d) not disclose it to any other authority, person, or entity not authorized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e) comply with any other conditions required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제6.7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임에 동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6.7: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The Parties agree that it is in their common interest to work together on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to build necessary capacities to strengthen competition policy development and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of the Parties.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may include: (a) sharing of relevant experiences an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라.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non-confidential information 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b) exchange of consultants and experts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c) exchange of officials of competition authorities for training purposes; (d) participation of officials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vocacy programmes; and (e) other activities as agreed by the Parties.
제6.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9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Article 6.8: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Chapter Nine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matters arising under this Chapter.
제6.9조 협의 양 당사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Article 6.9: Consultations In order to fos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or to address specific matters that arise under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enter into consultations. In its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indicate, if relevant, how the matter affects its important interests, includ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equested Party shall accord full an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concerns of the requesting Party.
제6.10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Article 6.10: Consumer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enforcement of such laws as well as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on matter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6.2.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제6.11조 공기업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6.4조^{3,4}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이 특별히 자신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laws or regulations to proscribe the use in trade of misleading practices, or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s. 3. Each Party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awareness of, and access to, consumer redress mechanisms. 4. The Parties may cooperate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Such coope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manner compatible with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in their available resources. Article 6.11: State Enterprises 1.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establishing or maintaining a State enterprise, entrusting enterprises with special or exclusive rights, or maintaining such rights. 2. With respect to Stat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entrusted with special rights or exclusive rights: (a)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contrary to the principles contained in Article 6.4; and (b)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such enterprise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ir commercial activities, ar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competition laws, insofar as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competition laws does not obstruct the performance, in law or in fact, of the particular tasks assigned to them.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정한다. (각주2)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각주3) 이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제6.4조제4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된 법과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각주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4조제4항과 제6.11조제2항a호는 정당한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기업에 대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ootnote 2) Special rights are granted by a Party when it designates or limits to two or more the number of enterprises authorized to provide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according to objective, proportional and non-discriminatory criteria, or confers on enterprises legal or regulatory advantages which substantially affect the ability of any other enterprise to provide the same goods or services. (footnote 3) Notwithstanding this paragraph, each Party understands that Article 6.4.4 shall only apply to laws and policies which are adop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otnote 4)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s 6.4.4 and 6.11.2(a)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the Parties from adopting laws and policies regarding State enterprises in order to achieve legitimate public policy or public interest.

가. 협정문의 내용

경쟁 챕터는 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② 협력, ③ 정보의 비밀 유지, ④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⑤ 소비자 보호, ⑥ 협의 및 분쟁해결, ⑦공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는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법을 유지하고,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독립성이 보장된 권한당국을 설립·유지하도록 함(협정 제6.4조의 1·2·3).

또한, 경쟁 관련 법·규정은 국적에 기초한 차별 없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하여 적용 및 집행함. 아울러, 경쟁 관련 법·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해야

하며, 경쟁 관련 법·규정 등은 모두 공개되어야 함(협정 제6.4조의 4·5·6).

아울러, 경쟁법에 따른 제재·시정조치 부과 시에는 최종 결정, 근거, 불복청구를 공개해야 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협정 6.4조의 7·8·9·10).

② 협력에서는 당사자들은 각국의 권한당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권한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 가능성을 규정함(협정 제6.5조).

협력을 위해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신속히 통보해야 함(협정 제6.5조의 가).

아울러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행 활동에 대해 양 당사국이 논의할 수 있음(협정 제6.5조의 나).

③ 정보의 비밀 유지에서는 각 당사자의 법·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협정 제6.6조의 1).

또한, 당사국이 비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요청의 목적, 요청한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 유

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정보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이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함(협정 제6.6조의 2·3·4).

④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에서는 각 당사자는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경쟁당국 공무원의 교류 등 기술 협력이 당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있음(협정 제6.7조).

⑤ 소비자 보호에서는 당사자들이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무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소비자 보호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협정 제6.10조).

⑥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특정 문제 해결이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분쟁해결 챕터가 비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협정 제6.8조, 제6.9조).

⑦ 공기업에서는 당사자들이 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공기업 및 배타적 권리를 위임받은 기업에 대해, 상업적 행위와 관련해서 경쟁법을 적용하도록 보장함(협정 제6.11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구분	한-싱	한-미	한-EU	한-페	한-콜	한-호	한-베	RCEP	한-필
협력	-	통지, 정보교환, 집행 협력 등	통지, 정보교환, 집행협력, 경쟁진작 등	통지, 정보교환, 집행 협력 등	통지 및 정보교환, 소비자 보호 협력 등	통지 및 경쟁의 촉진,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협력	통보, 조정, 정보 교환 등 경쟁법에 협력	통보, 정보 교환 등 경쟁법에 협력	통보, 정보 교환 등 경쟁법에 협력
공기업 및 독점	정부 소유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우위 부여 금지	공기업 및 가설유지 가능: 정부 권한 행사시 정부 준수 지정 독점 및 가설유지 가능: 정부 권한 행사시 정부 준수 상업적 고려사항 등	공기업 및 특별 배타적 부여 받은 기업 설립 가능: 경쟁법 준수 국가 독점 및 가설유지 가능: 상품 구입, 판매시 차별의 무 적용	공기업 지정 독점 및 가설유지 가능: 경쟁법 준수 점 지정 및 가설유지 가능: 경쟁법 준수 기술 지원	공기업 지정 독점 경쟁법 본연의 수치지 범에 한정하여 내국 경쟁하도장 공기업 촉진 금지	공기업이 영리 활동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보장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공기업 포함)에 경쟁법 적용 공적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내국 기업에 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공기업 포함)에 경쟁법 적용	공기업 및 가설유지 가능 상업적 행위와 경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
협약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확한 반경쟁 행위 등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일방국 당요청 시 반경쟁행위를 소위하는 협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우려 사항에 대한 고려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우려 사항에 대한 고려	일방국 당요청 시 협의 우려 사항에 대한 고려

구분	한-싱	한-미	한-EU	한-페	한-콜	한-호	한-베	RCEP	한-필
분쟁 해결	FTA 분쟁 해결절차 미적용	절차적 보장, 국 경간 소비자 보호, 협 력, 협의 조항을 제외하고 FTA분쟁 해결절차 적용	FTA 분쟁 해결절차 미적용	FTA 분쟁 해결절차 미적용	FTA 분쟁 해결절차 미적용	FTA 분쟁 해결 절차 미 적용	FTA 분쟁 해결절차 미적용	FTA 분 쟁해결절 차 미적 용	FTA 분 쟁해결절 차 미적 용
기타		절차적 보장 가격 차별 금 지 국경간 소비자 보호	-	기술지원 소비자 보호	기술지원	국경간 소비자 보호	기술지원, 비밀유지	기술협 력, 비밀 유지	기술협 력, 비밀 유지

5.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FTA 내 경쟁 챕터는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동 협정에 따른 혜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한-필리핀 FTA 경쟁 챕터도 대부분의 기체결 FTA 경쟁 챕터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의무보다는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정보 교환 및 비밀 유지, 기술지원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경쟁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당사국 경쟁 당국 간 협의, 통보, 조정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당사국 간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당사국 경쟁 당국의 경쟁법 집행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RCEP과 달리 한-필리핀 FTA는 별도의 공기업 조항을 두어 당사국이 공기업 등에 관해 본 협정 제6.4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것, 공기업의 상업적 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경쟁법 적용이 공기업 등의 임무 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경쟁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기업을 통한 공익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1. 개 요

양 당사국은 무역·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필리핀 FTA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생명산업, 중소기업, 문화산업, 지식재산, 팬데믹 및 백신 등 분야의 다양한 협력 활동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2. 협정문의 구성

경제 및 기술 협력 챕터는 6개 조문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양측은 협정 제7.1조(기본원칙)에서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협정 제7.2조(협력의 범위) 및 제7.3조(협력 형태)에서 9가지 부문(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산업,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서 정보 교환, 인적자원 훈련, 비즈니스 포럼 등의 협력 활동을 약속하였음.

그리고 협정 제7.4조(자원)에서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의 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협정 제7.5조(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에서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써 보다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팬데믹 대응, 백신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각각 구체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부속서를 마련하였음.

3. 주요 협상경과

양측은 한-아세안 및 기체결 FTA 협력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해 자원, 경제 및 기술협력 위원회 등의 규정을 협의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 사항 규정을 위해 이행약정 마련에 합의하였음.

제5차 협상 이후 COVID-19 등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강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완화, 백신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속서를 마련하였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 적용범위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2.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각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하며,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것 외에 기존 경제 및 기술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한다. 제7.2조 협력의 범위	Article 7.1 Basic Principles 1.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further strengthening trade, investments,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in support of the full 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undertake cooperation initiative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2. The Parties shall undertake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here necessary and appropriate, and shall endeavor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cademe,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iden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initiatives. 3. Reaffirming the value of exist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mechanism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respect and encourage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ir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rticle 7.2 Scope of Cooper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다음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가.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나. 혁신과 연구 및 개발 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라.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마. 지식재산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아. 전자상거래,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2.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7-가, 부속서 7-나 및 부속서 7-다에 규정된 협력을 추구한다. 제7.3조 협력 형태	1.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shall explore and undertake cooperative activities focusing on the following areas: (a) industrial development, including health and life sciences-related manufacturing and cooperation on processing of technology metals; (b) innov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d)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cooperation on film; (e) intellectual property; (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h) e-commerce; and (i) other area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2. The areas of cooperation shall cover priority sectors for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s agreed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shall also pursue cooperation as set out in Annex 7-A, Annex 7-B, and Annex 7-C. Article 7.3 Forms of Cooper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경제 및 기술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정보 교환 나. 우수 관행 공유 다. 인적자원 훈련 라. 전문가 교류 마. 무역 및 투자 증진 바. 비즈니스 포럼 사. 기술 지원 아. 공동 연구 및 개발 자.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The forms of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information exchange; (b) sharing of best practices; (c) training of human resources (HR); (d) exchange of experts; (e)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 business fora; (g) technical assistance; (h)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 transfer of technology and new business models; and (j)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제7.4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Article 7.4 Resources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employ the most effective means and endeavor to make available necessary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2.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nd capacity, the Parties shall contribute appropriately to the cost of implementation,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
제7.5조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Article 7.5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 나.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협력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라. 협력 사업과 활동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마. 이 협정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의를 촉진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대한민국 산	1. For purposes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a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to be co-chaired by senior officials from both Parties.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reviewing, evaluating, and approving proposals for cooperation; (b) collecting and consolidating the work plans of cooperation developed by each of the committees formed within this Agreement; (c) agreeing on and developing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establishing a work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d)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e) providing regular reports to the Joint Committee under Article 11.1 (Joint Committee) of this Agreement; and (f) carrying out other function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agree to employ efficient mechanisms and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4. The Parties recognize the role of the Joint Commissi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JTEC) established under the Memorandum 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공화국 통상산업부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치된 무역 및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및 지역 경제 협력 사업,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한 이행약정에 대하여 합의한다. 7. 위원회는 이 장 및 이행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facilitating consultations, and promoting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 the Parties. 5.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The meeting may be conducted in person or by any technological means available to the Parties. 6. The Parties agree on an Implementing Arrangement building upon and complementing existing bilateral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nitiatives, and activities. 7.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b-committees, as may be necessary,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under this Chapter and those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Article 7.6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양국은 당사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 협정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데 합의하고,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학계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노력하며,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데에 합의하였음(협정 제7.1조).

양국은 보건 및 생명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영역에서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백신 및 기후변화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속서를 마련함(협정 제7.2조).

협력의 형태로는 정보 교환, 우수 관행 공유, 인적자원 훈련, 전문가 교류, 무역 및 투자 증진, 비즈니스 포럼, 기술 지원,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그리고 기타 형태를 규정함(협정 제 7.3조).

효과적인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정 제7.4조), 협력에 관한 사항의 검토, 평가, 승인, 협력분야 개발 및 이행 점검 등을 위해 각 당사국의 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7.5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필리핀이 가입한 한-ASEAN FTA 및 RCEP 등 기체결 FTA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 협력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였음.

FTA	협력 분야
한 - 필 리 핀 FTA	①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②혁신과 연구 및 개발, ③소상공인·중소기업, ④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⑤지식재산, ⑥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⑦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⑧전자상거래, ⑨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⑩백신에 대한 협력, ⑪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한 - 베 트 남 FTA	①자동차, ②철강 및 금속, ③석유화학제품, ④전자제품, ⑤기계, ⑥의류·섬유 및 신발, ⑦유통 및 물류, ⑧축산 및 작물 생산, ⑨원예, ⑩수산 및 양식업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⑪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⑫수산 자원관리, ⑬산림관리, ⑭농업기반 및 식품가공, ⑮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⑯통관절차, ⑰원산지규정 및 그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⑱지식재산, ⑲중소기업지원정책, ⑳통계, ㉑공정경쟁, ㉒사회기반시설, ㉓투자, ㉔문화관련서비스
한-ASEAN FTA	①통관절차, ②무역 및 투자의 진흥, ③중소기업, ④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⑤관광, ⑥과학 및 기술, ⑦금융서비스, ⑧정보통신기술, ⑨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⑩지식 재산, ⑪환경산업, ⑫방송, ⑬건설 기술, ⑭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⑮광업, ⑯에너지, ⑰천연자원, ⑱조선 및 해상 운송, ⑲영화
한 - 인 니 CEPA	①자동차, ②철강 및 금속, ③화학제품, ④정보통신기술, ⑤전자제품, ⑥기계, ⑦의류·섬유 및 신발, ⑧선박, ⑨항공기, ⑩식품 및 음료, ⑪축산 및 작물 생산, ⑫수산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⑬수산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⑭산림관리, ⑮농업기반 및 식품가공, ⑯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⑰SPS, ⑱통관, ⑲원산지규정 및 그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⑳지식재산, ㉑자연인의 이동(전문가·교육생), ㉒중소기업지원정책, ㉓통계, ㉔공정경쟁, ㉕인프라, ㉖투자, ㉗과학·기술·혁신, ㉘문화 및 창조 분야, ㉙에너지 및 광물자원, ㉚보건, ㉛환경, ㉜건설서비스
RCEP	①상품 무역, ②서비스 무역, ③투자, ④지식재산, ⑤전자상거래, ⑥경쟁, ⑦중소기업
한 - 캄 보 디 아 FTA	①무역 및 투자 증진, ②농업, 임업 및 수산업, ③전자상거래, ④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⑤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⑥무역 및 투자 관련 법적

FTA	협력 분야
	틀, ⑦사회기반시설개발, ⑧산업 발전, ⑨정보통신기술, ⑩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7-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i>일반 규정</i>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발 목표에 따른 적절한 활동의 개발 및 수행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Annex 7-A Cooperation to Allevi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Pandemic <i>General Provisions</i> 1. The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ach Party to institute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nd safeguard public health, in accordance with GATT 1994, GATS, and other WTO covered agreements. 2.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s presented a global challenge that requires a coordinated response to ensure the continued flow of goods, services, and personnel in the global supply chains. 3. The Parties recognize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and undertaking appropriate activities in line with their development objectives to reinforce efforts to allevi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and pandemic,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양 당사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다루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i>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i> 5.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협정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 상품, 특히 식품, 개인보호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한 건강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가능한 한도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6. 양 당사국은 식품·의약품·중요 의료제품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에 대하여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조치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i>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i> 7. 양 당사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방지하고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함을 보장하면서, 국외 출장을 포함한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4.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to address future PHEIC and pandemics to facilit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of both Parties, by working to ensure the flow of goods in global supply chains, facilitating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and implementing cooper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on trade and investments. <i>Working to Ensure the Flow of Goods in Global Supply Chains</i> 5.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flow of essential goods, particularly food, critical health and medical product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and its raw materials, to the extent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6.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fr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and non-tariff barriers on essential goods, including food, pharmaceuticals, critical medical supplies, and its raw materials ensuring that such measures ar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temporary and consistent with WTO rules. <i>Facilitating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i> 7.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including cross-border business travel, while ensuring to safeguard public health in line with their efforts to combat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8. 양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9.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존엄, 건강 및 안녕, 안전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머무르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i>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i> 10.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다. 11. 양 당사국은 필수적인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물 및 식품과 같은,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및 공	PHEIC and pandemic as well as minimize its socioeconomic impacts. 8. The Parties also acknowledge the benefit of establishing guidelines to provide support and assistance to each other and to facilitate movement of people, including essential cross-border travel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ensuring business continuity,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out undermining the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9.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enhance cooperation to provide appropriate and adequate assistance to nationals of each other,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who stay, work, and study in the other country, working towards the dignity, health and well-being, safety and fair and effective treatment of those affected by the pandemic. <i>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on Trade and Investment arising from PHEIC and Pandemics to Facilit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i> 10. The Parties may develop and implement cooper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on trade and investments and share best practices on measures to facilit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PHEIC and pandemic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1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implement joint initiatives with the private sector for the socioeconomi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급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며 금융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 시의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recovery of both Parties that include strengthening efforts to stabilize the manufacturing and supply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its raw materials, such as vital medical supplies and critical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facilita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mprove access to finance. 12.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make relevant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and share best practices in a timely manner when adopting a measure with a foreseeable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함.

글로벌 공급망 내 필수 상품, 특히 식품, 개인보호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 건강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이들 필수 상품의 수출 금지·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는 데 협력함.

양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상대국에 머무르는 서로의 국민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함.

아울러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양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하기 위해 협력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캄보디아 FTA에서 처음으로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부속서를 도입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COVID-19를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팬데믹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 백신에 대한 협력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7-나 백신에 대한 협력	Annex 7-B Cooperation on Vaccine
일반 규정	<i>General Provisions</i>
1.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 영향을 인식하면서,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1. The Parties, recognizing the impact that a pandemic such as COVID-19 has caused around the world, agree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cooperate in the area of vaccines to end the pandemic and address future global health threats.
2. 양 당사국은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를 포함한 국제 기관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 혁신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The Partie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along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VAX facility, to expand vaccine production and related supplies and manufacturing innovations to address current and future global health threats.
협력 활동	<i>Cooperative Activities</i>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시에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3. The Parties will promote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enterprises of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production and global supply of vaccines in times of global vaccine shortages by combining each of their strengths in the following areas:
가. 백신 제조	(a) manufacture of vaccines;
나.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b) supply of raw materials for vaccine production;
다.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c)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vaccines;
라.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그리고	(d)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vaccines; and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e)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형태의 협력 4. 양 당사국은 임상 시험 및 백신의 전체 승인에 대하여 국내 규정, 관행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백신 및 백신 생산용 원재료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The Parties will exchange information on domestic regulations, practices, and application process with regard to clinical trials and full approval of vaccines. 5. The Parties will endeavor to adopt expedited customs procedure for vaccine and raw material to produce vaccine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양국은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의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 혁신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구체적으로 백신의 제조,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백신 부족 시에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백신의 전체 승인에 관한 자국 규정의 정보를 교환하며,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백신에 대한 협력’ 부속서를 도입함.

라.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7-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i>일반 규정</i>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인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i>협력 활동</i>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과 조율하여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적응·완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증진하고 파	Annex 7-C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i>General Provisions</i>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climate change and its adverse effects are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that require urgent and collective action. 2. The Parties reaffirm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FCCC”) lays the firm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acknowledge that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Paris Agreement have been instrumental in implementing the UNFCCC. <i>Cooperative Activities</i> 3. The Parties agree to develop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enhancing capacities to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ir respect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4. In coordination with competent authorities, the Parties agree to promote public and priv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programs or projects to achieve their ND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리협정 제6조에 따른 기후 완화 투자를 지원하고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혜택을 상호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한다.	targets and to find means to use the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 to support climate mitigation investments and mutually explore the benefits of market and non-market mechanism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5. 양 당사국은 국가 재고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5.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for th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of national inventories.
6. 양 당사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우수 관행과 기술적 노하우 교환 및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6. The Parties agree to organize seminars, symposia, workshops, and meetings on various topics of interest to both Partie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and exchange best practices and technological know-how on climate action.

양국은 국가결정기여(NDCs)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역량 향상에 협력하고,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적응·완화 프로그램을 증진하며, 국가 재고의 측정·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향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부속서를 도입함.

5. 검토의견

경제 및 기술 협력 챕터는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등을 기초로 협력 분야, 형태, 협력위원회 및 자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국 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필리핀이 가입한 한-ASEAN FTA 및 RCEP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보건·생명과학 관련 산업과 기술금속 가공 관련 산업의 개발 협력 및 영화를 포함한 문화산업의 협력 등을 보완함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또한 협정 제7.5조(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에서 협력분야의 개발, 협력사업의 이행 등을 위해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6항에서 각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제5항 및 제7항에서 위원회 개최 주기(최소 연 1회)와 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한-베트남 FTA 와 한-캄보디아 FTA 에 비해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²⁹⁾.

또한 경제 및 기술 협력 챕터에서는 3개의 부속서를 도입하였는데, 한-캄보디아 FTA에 이어 두 번째로 ‘팬데믹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부속서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로는 최초로 ‘백신에 대한 협력’ 과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부속

29) 한-베트남 FTA에서는 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제13.4조) 위원회의 형태 및 기능은 별도의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제6.4조).

서를 도입하였음.

‘팬데믹 협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과 필수적 인력 이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백신 협력’에서는 백신 제조, 원부자재공급, 백신 공동개발을 위한 R&D 협력 등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협력’에서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의 협력 분야를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건·환경 분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내용은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2016년 체결),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 2018년 체결)에 도입된 바 있음.

제8장 투명성

1. 개 요

양 당사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 규정, 절차 및 행정판정의 공표, 통보 및 정보의 제공, 행정절차 및 재심사·불복 청구의 보장 등을 규정함.

2. 협정문의 구성

투명성 챕터는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의(협정 제8.1조), 공표(협정 제8.2조), 정보의 제공(협정 제8.3조), 행정절차(협정 제8.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협정 제8.5조), 다른 장과의 관계(협정 제8.6조)로 이루어짐.

3. 주요 협상경과

투명성과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8.2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Article 8.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means an administrative ruling or interpretation that applies to all persons and fact situations that fall generally within its ambit and that establishes a norm of conduct but does not include: (a) a determination or ruling made in an administrative or quasi-judicial proceeding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person, good, or service of the other Party in a specific case; or (b) a ruling that adjudicate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act or practice. Article 8.2 Publica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publicly available. 2.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shal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a) publish in advanc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b)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제8.3조 정보의 제공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제8.2조에 언급된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Article 8.3 Provision of Information Upon the request of a Party, the other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pertaining to any actual or proposed measure referred to in Article 8.2 that the requesting Party considers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제8.4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 때 그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Article 8.4 Administrative Proceedings With a view to administering in a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in its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 which these measures are applied to particular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n specific cases, that: (a) wherever possible,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persons of the other Party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a proceeding are provided reasonable notice, when a proceeding is initiated, including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 제8.5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 statement of the legal authority under which the proceeding is initiated,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any issues in controversy; (b) persons of the other Party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a proceeding ar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facts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ir positions prior to any fin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time,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permit; and (c) its procedures ar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8.5 Review and Appeal 1.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s of the prompt review and, where warranted, correc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relating to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tribunals sha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office or authority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shall not have any substant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matter.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8.6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pport or defe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b)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submissions of record or, where requir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the record compi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3. Each Party shall ensure, subject to appeal or further revie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that any decis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b) shall be implemented by, and shall govern the practice of, the office or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Article 8.6 Relation to other Chapters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provisions relating to transparency in other Chapters, the la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양국은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국내 법·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상대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고(협정 제8.2조), 다른쪽 당사국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하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8.3조).

또한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쟁점사항에 대해 통지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협정 제8.4조).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기 위해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 및 절차를 수립·유지하도록 명시함(협정 제8.5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베/EU/호/캄/뉴/캐/콜	한-미	RCEP, 한-인도, 아세안
공표, 정보제공, 행정절차, 재심 규정	공표, 정보제공, 행정절차, 재심 규정	공표, 정보제공, 행정절차, 재심, 민간 구매정책, 부패방지 규정	별도 챕터 없음

5. 검토의견

우리나라가 채택한 FTA의 투명성 챕터는 현재 우리 국내법상 시행되고 있거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 규정, 절차의 신속한 공표와 공개 보장, FTA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와 정보 제공, FTA 대상이 되는 조치의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보장, FTA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 및 사법 검토와 재심 기회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규정된 투명성 챕터 중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한-EU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 등은 한-미 FTA의 투명성 규정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필리핀 FTA의 투명성 챕터는 한-미 FTA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체결된 다른 FTA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국내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³⁰⁾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30)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19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20조), 처분의 사전 통지(제21조), 의견청취(제22조), 처분의 이유 제시(제23조), 고지(제26조), 의견제출 및 청문(제2절), 공청회(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4장), 행정예고(제5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불복청구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특별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

제9장 분쟁해결

1. 개 요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양 당사자 간 대립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FTA 협정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국은 WTO와 FTA 양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된 분쟁해결절차 이외 다른 분쟁해결절차는 배제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협정 제9장(분쟁해결)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17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 본문에서는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 절차와 유사하게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함.

협정문은 분쟁해결의 적용범위(협정 제9.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협정 제9.4조), 협의(협정 제9.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협정 제9.6조), 중재패널(협정 제9.7조~제9.13조), 최종보고서 이행(협정 제9.14

조), 보상 및 혜택의 정지(협정 제9.1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사항, 절차의 세부 규칙 등은 부속서[절차 규칙(협정 부속서 9-가),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협정 부속서 9-나)]에 별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진행되어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적용범위 및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3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	Article 9.3 Scope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is Chapter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wherever a Party considers tha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2. 이 장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16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경쟁) 및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 제9.4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a)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b) the other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2.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from the following: Article 2.16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hapter Six (Competition), and Chapter Seve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rticle 9.4 Choice of Forum 1. Where a dispute regarding any matter arises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 the WTO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the complaining Party may select the forum in which to settle the dispute. 2. Once the complaining Party ha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or referred a matter to, a dispute settlement panel under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forum selected shall be used to the exclusion of other for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또는, 한쪽 당사국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언제나, 양 당사국 간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적용하기로 규정함(협정 제9.3조).

제2.16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경제) 및 제7장(경제 및 기

술협력)은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3조제2항).

그리고 한-필리핀 FTA와 WTO 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4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	WTO
비위반 제소 ³¹⁾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허용	도입
분쟁해결 절차 선택	FTA 절차와 WTO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협정 중 하나 선택	FTA 절차와 WTO를 포함,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협정 중 하나 선택	FTA 절차와 WTO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협정 중 선택	RCEP 절차 또는 분쟁당사자 들이 당사자인 다른 무역 또는 투자 협정 절차 중 선택	FTA 절차 또는 협정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 절차 중 선택	FTA 절차, WTO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 절차 중 선택	-
	나머지 절차는 자동적 배제	나머지 절차는 자동적 배제	나머지 절차는 자동적 배제	선택시 나머지 절차 배제	선택시 나머지 절차 배제	선택시 나머지 절차 배제	

31)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 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5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9.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제시한다. 3. 피소 당사국은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응답한다. 4.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5. 양 당사국은 협의 중에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Article 9.5 Consultations 1. Each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9.3.1. 2. The Party requesting consultations shall make the request in writing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measure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f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3.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reply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4.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in 30 days, or within 15 days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concerning perishable good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5. During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full examination of how the measure at issue might affect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9.6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의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는 양 당사국의 합의로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Parties shall trea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6.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in any further proceedings. Article 9.6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1.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e procedures that may be undertaken voluntarily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agree. 2.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may be reques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They may begin at any tim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be terminated at any time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3. If the Parties agree,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may continue while the proceedings of the arbitration panel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re in progress. 4. Proceedings involving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nd, in particular,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during these proceeding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in any further proceedings.

한 당사국의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피소 당사국은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응답하고, 30일(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은 15일)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5조).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국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양 당사국의 합의로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음. 관련 절차 및 양국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규정함(협정 제9.6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	WTO
협의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공동위회부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도입	도입	미도입
협의기간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다. 중재패널의 설치 및 구성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7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9.5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9.7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1. The complaining Party that made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9.5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i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나.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9.8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7조에 따른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고, 제9.12조 및 제9.13조에 규정된 대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a)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does not reply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b)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does no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30 days, or within 15 days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concerning perishable good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such consultations; or (c) the Parties fail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s within 60 days, or within 30 days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concerning perishable good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such consultations. 2.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he complaining Party shall identify in its request the specific measure at issue, and the f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Article 9.8 Terms of Reference of the Arbitration Pane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matter referred to in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pursuant to Article 9.7, to mak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if applicable, recommendations and to present written reports as provided in Articles 9.12 and 9.13.”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9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각각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할을 할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들을 고려하여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45일의 만료부터 7일 내에 회합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법, 국제무역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	Article 9.9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rbitration panel shall consist of three arbitrators. 2.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each appoint one arbitrator who may be its national and propose up to three candidates to serve as the third arbitrator who shall be the chair of the arbitration panel. The candidates for the third arbitrator shall not be nationals of either Party, nor have their usual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nor be employed by either Party, nor have dealt with the dispute in any capacity. 3.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agree on and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taking into account the candidates proposed. If the Parties fail to agree upon and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within 45 days, the Parties shall meet within seven days from the expiry of the 45 days and select the chair by lot from the list of candidates proposed by both Parties. 4.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third arbitrator is appointed. 5. All arbitrators shall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law, international trade, or other matters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in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부속서 9-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9-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Each arbitrator shall be independent, serve in his or her individual capacity, and not be affiliated with, n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or organization related to the dispute, and shall comply with Annex 9-B. 6. Where a Party considers that an arbitrato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nnex 9-B, the Parties shall consult and replace, if so agreed, that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7. If an arbitrator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resigns or becomes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r is to be replaced according to paragraph 6, a successor shall be selected within 15 days in accordance with the appointment method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mutatis mutandis. The successor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riginal arbitrator. The work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e arbitrator resigns or becomes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r is to be replaced according to paragraph 6. The work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resume on the date the successor is appointed.

협의 요청을 한 제소국은, 피소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미회신 하거나, 피소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 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긴급사안 3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7조).

중재패널 설치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요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한 조사, 판단, 판정 및 서면보고서 제출 등의 사항을 위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 9.8조).

중재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요청 접수 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패널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의장을 선정하도록 하며, 중재패널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 임명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9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	WTO
패널의 설치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마지막 패널위원 임명	패널의장 임명	-	분쟁해결기 구 결정
패널위원 임명 미합의시 절차	명부 추첨	명부 추첨	명부 추첨	WTO 사무총장 PCA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명부 추첨	-

라. 중재패널 절차, 최종보고서의 이행 및 보상·혜택의 정지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10조 중재패널 절차	Article 9.10 Proceedings of the Arbitration Pane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1. The arbitration panel shall meet in closed sessions. The Parties shall be present at the meetings only when invited by the arbitration panel to appear before it. 2. The Partie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at least one written submission and to attend any of the presentations, statements, or rebuttals in the proceedings. All information provided or written submissions made by a Party to the arbitration panel, including any comments on the interim report and responses to questions put by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3. A Party asserting that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such inconsistency. A Party asserting that a measure is subject to an excep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exception applies. 4. The arbitration panel should consult with the Parties as appropriate and provide adequate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5. The arbitration panel shall interpret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6. The arbitration panel shall make its decisions, including its reports, by consensus, provided that where an arbitration panel is unable to reach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7.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 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기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중재패널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분쟁의 양 당사국의 의견을 구한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consensus, the decisions may be made by majority vote. 7.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arbitration panel may seek information from any relevant source and may consult experts to obtain their opinion or technical advice on certain aspects of the matter. Before doing so, the panel shall seek the view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out prejudice to its right to seek information. The arbitration panel shall provide the Parties with a copy of any advice or opinion obtained and an opportunity to provide comments. 8. The deliberations of the arbitration panel and the documents submitted to it shall be kept confidential. 9. Notwithstanding paragraph 8, either Party may make public statements as to its views regarding the dispute, but shall treat a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written submissions delivered by the other Party to the arbitration panel which the other Party has designated as confidential. Where a Party has provided information or written submissions designated as confidential, that Party shall, within 20 days from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or written submissions which may be disclosed publicly. 10. The reports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draft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arties.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ase its reports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may take into account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to the arbitration pane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 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9.11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에 대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중재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11. The reports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contain both the descriptive parts summarizing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th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of the arbitration panel. If the Parties agree, the arbitration panel may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in its reports. Th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and, if applicable, any recommendations of the arbitration panel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12. The venue for the arbitration panel proceedings shall be deci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venue shall alternate between the capitals of the Parties with the first meeting of the arbitration panel proceedings to be held in the capital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Article 9.11: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Proceedings 1. Where the Parties agree, the arbitration panel may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agreement. Upon the request of a Party, the arbitration panel proceedings shall be resumed after such suspension. In the event of such suspension, the timeframes regarding the work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If the work of the arbitration panel has been continuously suspended for more than 12 months, the authority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laps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The Parties may agree to terminate the proceedings of an arbitration pane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by jointly notifying the chair of the arbitration panel at any time before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to the Parties. 3. Before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to the Parties, the arbitration panel may,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propose to the Parties that the dispute be settled amicably.
제9.12조 잠정보고서	Article 9.12 Interim Report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arbitration panel shall,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issue to the Parties an interim report containing the descriptive parts, th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and, if applicable, any recommendations as to: (a)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or (b) whether a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basic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2. Where the arbitration panel considers that the deadline for the interim report cannot be met, it may extend the perio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following a written notification stating the reasons for the delay and the date on which the panel plans to issue its interim repor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interim report be issued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9.13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9.12조제1항 및 제9.13조제1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3. Either Party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arbitration panel on its interim report within 15 days from the issuance of the report. After considering any written comments by the Parties on the interim report, the arbitration panel may modify its report and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Article 9.13 Final Report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arbitration panel shall issue a final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terim report. 2. Where the arbitration panel considers that the deadline for its final report cannot be met, it may extend the perio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following a written notification stating the reasons for the delay and the date on which the panel plans to issue its final repor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final report be issued later than 15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3.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concerning perishable goods, the arbitration panel shall make every effort to issue its interim and final reports within half of the respective time periods under Article 9.12.1 and Article 9.13.1.
제9.14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Article 9.14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1. The determinations set out in the final report of the arbitration panel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모든 조치를, 제3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2. If, in its final report, the arbitration panel determines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not conformed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eliminate the non-conformity immediately, or if this is not practicabl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3.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Where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of the arbitration panel, either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the original arbitration panel, which shall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4.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notify the complaining Party of any measure that it has taken to comply with the determinations of the arbitration panel, before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greed by the Parties or determined by the original arbitration pane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Where there is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s to whether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as determin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arbitration panel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 3, either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the original arbitration panel.
제9.15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Article 9.15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Benefits 1.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fails to notify the complaining Party of the implementing measures before the expir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 9.14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정지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제9.13조에 언급된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or notifies the complaining Party that implementation is impracticable, or the arbitration panel to which the matter is referred pursuant to Article 9.14.4 determines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failed to eliminate the non-conformity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if so requested,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complaining Party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compensation. 2. If there is no agreement on satisfactory compensat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complaining Party may, at any time,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hat i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he complaining Party may begin suspending benefits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such suspension. The notification of suspension shall not be mad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mentioned in paragraph 1. 3.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suspen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temporary measures. Neither compensation nor suspension is preferred to full elimination of the non-conformity as determined in the report of the arbitration panel. The suspension shall only be applied until such time as the non-conformity is fully eliminated or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s reached. 4. In considering what benefits to suspend pursuant to paragraph 2: (a) the complaining Party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benefits with respect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 대하여 혜택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의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제소 당사국에 의한 혜택의 정지를 위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9.14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 또는 제9.14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9.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9.1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the same sector or sectors as that in which the report of the arbitration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9.13 has found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 if the complaining Party considers that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same sector or sectors, it may suspend benefits with respect to other sectors. The notification of such suspension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indic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c) the level of suspen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equivalent to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5.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considers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suspension of benefits by the complaining Party set out in paragraph 2, 3, or 4 have not been met, it may refer the matter to an arbitration panel. 6. The arbitration panel that is established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or Article 9.14 shall, wherever possible, have, as its arbitrators, the arbitrators of the original arbitration panel. If this is not possible, then the arbitrators of the arbitration panel that is established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or Article 9.14 shall be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9.9. The arbitration pane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or Article 9.14 shall issue its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20 days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45 days on the other issues after the date when the matter is referred to it. When the arbitration panel considers that it cannot issue its report within the aforementioned periods, the relevant period may be extended by the arbitration panel for a maximum of 30 days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repor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16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9-가에 규정된 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그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 또는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모든 기간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Article 9.16 Rules of Procedure 1.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of Procedure set out in Annex 9-A. The Parties, in consultation with the arbitration panel, may agree to adopt additional rules of procedure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Annex. 2. Any period of time or other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anel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in Annex 9-A may be modifi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하며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해야 하고, 중재패널은 협정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주장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의 입장·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협정 제9.10조), 보다 상세한 절차 규칙은 부속서 9-가(절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16조).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내에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며,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경우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잠정보고서 제출로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12조)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경우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 설치로부터 150일 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13조).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피소국은 즉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협정 제9.14조).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 또는 중재패널이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한 이행조치가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보상절차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며(협정 제9.15조 제1항),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에 협정상의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9.15조 제2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	WTO
패널위원 개별의견 제시	-	-	-	가능 (의명)	가능 (의명)	-	가능 (의명)
잠정 보고서 제출 기한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긴급한 경우 45일)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긴급한 경우 45일)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긴급한 경우 45일)	패널 설치일부터 150일 내 (긴급한 경우 90일)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의장임명 180일 내	-

	내)	내)	내)	내)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15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15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15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45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6개월 (긴급한 경우 3개월)
패널심의 총 소요기간	120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30일 연장 가능)	180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60일 연장 가능)	225일	180일 (90일 연장 가능)

5.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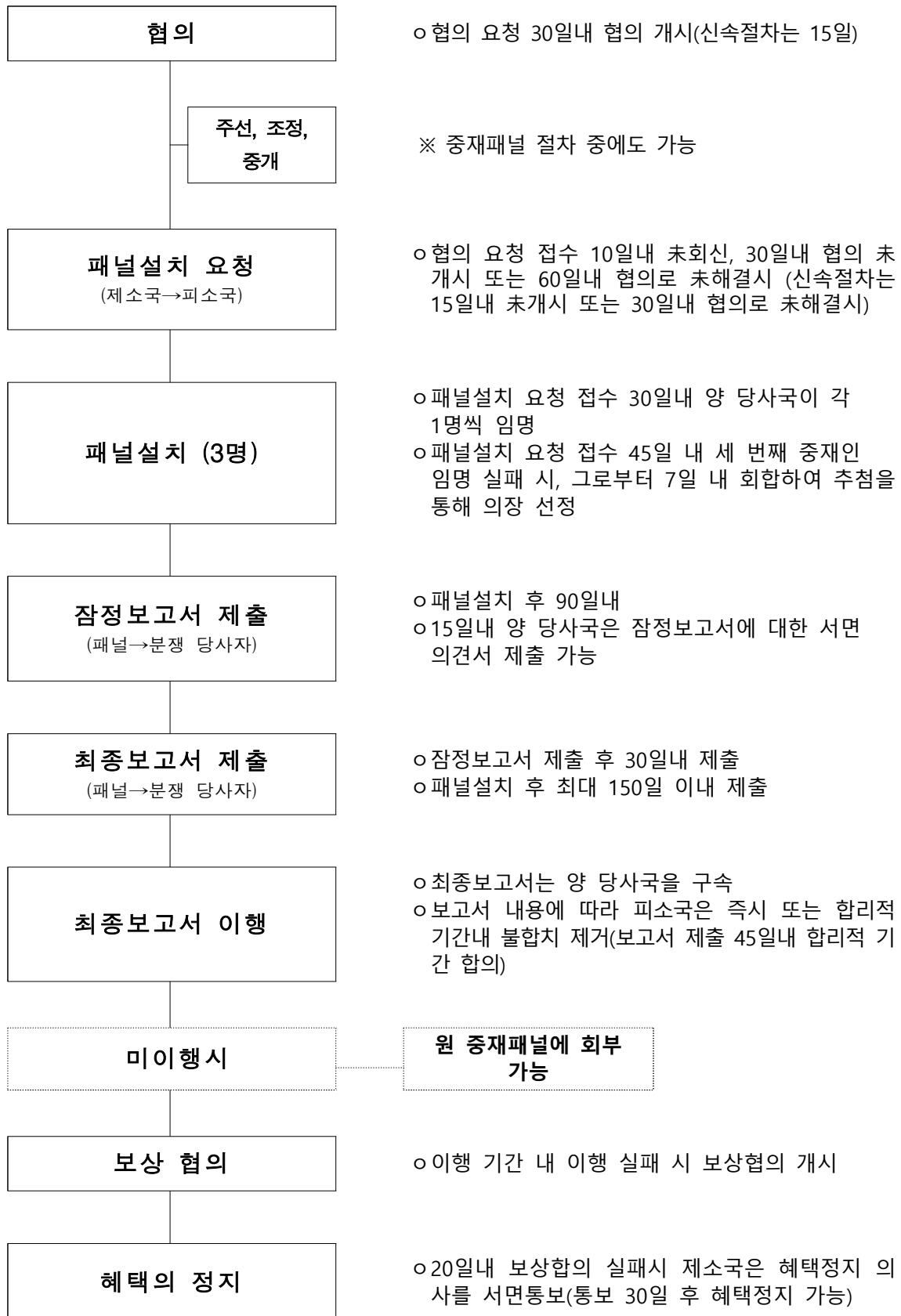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한-필리핀 FTA는 대다수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동 협정, WTO 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를 제외한 다른 협정에 의한 절차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복적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위험 및 중복 절차 참가에 대한 부담을 예방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경제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중재패널 심의에 소요되는 총 기간을 비교하면, 한-필리핀 FTA는 WTO 절차, RCEP, 한-아세안 FTA보다 기간이 단축되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필리핀 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한-필리핀 분쟁해결 절차 ＞



제10장 예외

1. 개 요

예외 챕터는 한-필리핀 FTA 적용상 예외를 규정한 내용으로 WTO 협정상 인정되는 예외를 포함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WTO 협정상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³²⁾ 일반적 예외가 동 한-필리핀 FTA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예외 챕터는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시장접근 등 일부 분야에 GATT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일반적 예외(협정 제10.1조), 안보 예외(협정 제10.2조), 과세(협정 제10.3조), 정보의 공개(협정 제10.4조) 및 비밀유지(협정 제10.5조)를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예외와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WTO 및 기체결 FTA 상 일반적 인 규정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은 없었음.

32) GATT 제20조상의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 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4. 협정문의 주요 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1조 일반적 예외 제2장(상품 무역)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0.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하거나 기능을 저하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Article 10.1 General Exceptions For purposes of Chapter Two (Trade in Goods), Article XX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Article 10.2 Security Exception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 require a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b)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s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i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i) taken so as to protect critical public infrastructure from deliberate attempts intended to disable or degrade such infrastructure; 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조치, 또는 4) 국내적 비상시,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iv) taken in time of national emergency,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inform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of measures taken under subparagraphs 1(b) and (c) and of their termination.
제10.3조 과세	Article 10.3 Taxation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 범위에서, 제2장(상품 무역)의 제2.14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에만 과세 조치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1. Except as set out in this Articl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ither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ch tax convention, the la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at convention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jointly determining whether any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at convention. 3. This Agreement shall only grant rights or impose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axation measures where they are granted or imposed under Article 2.14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of Chapter Two (Trade in Goods), to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나.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예외로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2) 필리핀의 경우, 재무부 국세청장, 또는 그 승계인 제10.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xtent provided under Article III of GATT 1994. 4.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a) tax convention means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or any other international taxa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b) taxes and taxation measures do not include customs duties as defined in Article 1.5 (General Definitions) and the measures listed in the exceptions in subparagraphs (b), (c), (d), and (e) of that definition; and (c) competent authorities means: (i) for Korea, the Deputy Minister for Tax and Custom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 his or her successor; and (ii) for the Philippines, the Commissioner of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Department of Finance, or his or her successor. Article 10.4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5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Article 10.5 Confidentiali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where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designates such information as confidential, the other Party shall,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양국은 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 적용을 양해하고(협정 제10.1조), 공개 시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0.2조).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제외하고, 동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 상 불일치가 있을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불일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있는 책임 당국을 지정하고 있음(협정 제10.3조).

아울러 공개 시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 또는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협정 제10.4조),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국가는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0.5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캄보디아 FTA, 한-베트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미 FTA, 한-EU FTA, 한-콜롬비아 FTA 등 우리의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이와 유사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5. 검토의견

협정 적용의 예외 등 한-필리핀 FTA 운용에 있어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FTA 체결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예외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엄밀한 해석 및 적용을 수반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11장 제도적 장치

1. 개 요

제도적 장치 챕터는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정에 따른 각종 위원회와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제도적 장치 챕터는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 감독,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 감독 등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협정의 개정 검토·채택 및 절차 규칙의 채택 등 공동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1.1조).

또한 공동위원회의 운영 절차 및 방식(협정 제11.2조)을 규정하고, 공동위원회 산하에 각 챕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등(협정 제11.3조)을 두도록 하며,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접촉선을 수립(협정 제11.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제도 규정과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진행되었고,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정부는 설명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1.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의 통상산업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자의 지명자들이 공동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Article 11.1 Joint Committee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composed of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of each Party. It shall be co-chaired by ministerial level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the Philippines,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a)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work of all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c)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d) consider ways to further enhanc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제9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모색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자신의 임무 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양 당사국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부속서 및 부록을 포함한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under Chapter Nine (Dispute Settlement), seek to resolve problems or disputes that may aris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f) carry out any other function relating to the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as the Parties may agree. 3. The Joint Committee may: (a) establish and delegate responsibilities to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assist it in accomplishing its tasks; (b) consider and adop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including its annexes and appendices,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the respectiv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the Parties; (c) adopt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e)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4. When a Party submits information considered as confidential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to the Joint Committee,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any other body, the other Party shall treat that information as confidenti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라.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여기는 정보를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11.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안에 회합하고, 그 후에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로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Article 11.2 Procedures of the Joint Committee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within one year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convene: (a) in regular session every year, with such sessions to be held alternately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and (b) in special se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a request from either Party, with such sessions to be hel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at such other location as the Parties may agree. 2. The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may be held in person or, if agreed by the Parties, by any technological means available to them. 3. All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taken by mutual agre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다. 제11.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다음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가. 상품무역위원회 나.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라. 무역구제위원회, 그리고 마.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2.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 회합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와 같다.	Article 11.3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1. The following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any other bodies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Joint Committee: (a) Committee on Trade in Goods; (b)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c)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d) Committee on Trade Remedies; and (e)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2. The composition, frequency of meetings, and functions of the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any other bod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s determined by the Joint Committee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3. The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any other bodies shall inform the Joint Committee of their schedules and agenda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ir meetings. They shall report to the Joint Committee on their activities at each regular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 제11.4조 접촉선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4. The Joint Committee may decide to change or undertake the task assigned to a committee, working group or any other body or may dissolve a committee, working group, or any other bod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1.4 Contact Points 1.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trade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following contact points: (a) for Kore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its successor; and (b) for the Philippines,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r its successor. 2.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shall indicate the office or official responsible for any matter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provide the required support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the requesting Party. Each Party shal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in its contact point.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필리핀의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조율하며,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모색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1.1조).

양 당사국은 협정 발효후 1년 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며, 한 쪽 당사국의 요청 접수로부터 30일 내 특별 회기로 회합하고,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1.2조).

이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 회합빈도 및 기능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협정 제11.3조).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1.4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	한-아세안	한-미	한-EU	한-인니	RCEP
공동위원회 주기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부속 기구	분야별 상품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역외가공지역 무역구제 경제및기술협력	분야별 원산지	분야별 역외가공 수산	분야별 상품 SPS 관세 서비스투자 및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역외가공	분야별 상품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통합형 상품 서비스·투자 지속가능성장 기업환경

5. 검토의견

동 챕터는 협정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위원회 산하에 각 챕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접촉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행을 위해 협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위원회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협정 관련 사안의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각 챗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접촉선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선 각 챗터별로 그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의 이해를 원활히 하고 있음.

한편, 동 협정은 개별챗터³³⁾에서 5개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정 제11.1조(공동위원회) 제2항은 공동위원회가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³⁴⁾,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조율하고 협정 제11.3조(위원회 및 작업반) 제1항은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전반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와의 관계 설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5개 위원회의 설치를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33) 협정 제2.20조(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협정 제3.11조(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속서 4-다(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협정 제5.21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관련 정부 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정 제7.5조(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4) 상품무역위원회(협정 제2.20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협정 제5.21조),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부속서 4-다), 무역구제위원회(협정 제3.11조),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협정 제7.5조) 등 5개 위원회

있어 공동위원회가 상호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5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임.

또한 제11.3조(위원회 및 작업반) 제4항은 공동위원회가 협정에 따라 할당된 위원회의 임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임무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FTA 개정시 공동위원회와 협정에 따른 각 위원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필리핀 FTA 위원회 규정 및 기능 >

구분		규정(조)	주요 기능
위원회	상품 무역위원회	제2.20조	제2장(상품)의 이행 및 운영 점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최신화 조치 등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제5.21조	제4장(원산지 규정) 및 제5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일관된 운영 보장,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국가상품분류체계의 전환에 근거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국제 표준에 따른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전자증명 및 검증 시스템의 가능한 개발에 대한 작업, 협정에 따른 특혜 활용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의 정기적 교환 등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4-다	역외가공지역의 필요성 검토,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구역 결정,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수립,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상품 목록 및 구체적 절차 작성 등
	무역구제 위원회	제3.11조	무역구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증진, 제3장(무역구제)의 이행감독, 당사국 간 협력 증진, 반덤핑·보조금 및 상계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의 정보 교환 등

	경제협력 위원회	제7.5조	▪ 협정 내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의 수집 및 통합, 당사국 간 협력분야 개발 및 작업계획 수립, 협력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
--	-------------	-------	---

제12장 최종 규정

1. 개 요

최종 규정 챕터는 동 협정의 개정, 검토, 발효 및 종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최종 규정 챕터는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 내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규정(협정 제12.1조)하였고,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협정 제12.2조) 및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 개시(협정 제12.3조)를 규정하고 있음.

협정의 검토(협정 제12.4조), 발효(협정 제12.5조) 및 종료(협정 제12.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협정의 정본으로 한국어본 및 영어본을 이 협정의 정본(협정 제12.7조)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최종 규정 챕터는 국제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정부는 설명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2.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2.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12.4조 협정의 검토	Article 12.1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he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2.2 Amendments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Any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all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amendment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2.3 Amendments to the WTO Agreement If any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 that the Parties have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is amended,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to consider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Article 12.4 Review of the Agre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에 그리고 그 후 언제라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12.5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2.6조 종료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7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t any time thereaft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eview, upon the request of a Party, with a view to furthering its objectives. Article 12.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following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written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which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that all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rticle 12.6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Party. Such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Article 12.7 Authentic Texts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202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함(협정 제12.1조).

협정의 개정과 발효와 관련하여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협정 제12.5조),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일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도록 함(협정 제12.2조).

또한 협정문에 통합되어있는 WTO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함(협정 제12.3조).

협정의 검토와 관련하여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 그리고 언제라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음(협정 제12.4조).

협정의 종료는 한쪽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2.6조).

협정문 정본 관련, 한국어본, 영어본 등이 동등한 정본임을 규정함(협정 제12.7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필리핀	한-캄보디아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니	한-미
발효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날 또는 합의일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날	서면통보로부터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날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일	서면통보로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일
개정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종료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180일 후	-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180일 후

5. 검토의견

동 챕터는 협정의 개정, 검토, 발효 및 종료 등 국제 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3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며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협정안 제2장(상품 무역) 제2.4조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이와 관련한 국내법인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 협정안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

협 정 안	관 계 법 령
제2장 상품 무역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 3. (생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u>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u>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u>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u> ③ (생략)

- 따라서, 이 협정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 (개요)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효과(GDP, 소비자 후생, 고용, 세수) 및 산업별 영향(수출입, 생산효과) 분석*

*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라 타결 이후 영향평가를 실시. 대외경제研, 산업研, 농촌경제研, 해양수산업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 참여('22.7~11월)

<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

실질 GDP (15년 누적)	소비자 후생 (15년 누적)	생산효과(15년 연평균)			고용효과 (15년 누적)	세수증감 (10년평균)
		제조업	농업	수산업		
0.01%	1.6억불	662억원	△95억원	△1천만원	1,540명	△422억원

- (거시효과)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라 장기(15년간) ①실질 GDP는 0.01% 증가 ②소비자 후생은 1.6억불 개선 예상

- (고용)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15년간 1,540명의 고용 창출효과
- (세수) 발효 후 10년간, 관세수입 등 감소로 연평균 610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되나,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189.7억원의 세수 증가 예상

- (산업영향) 제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662억원의 국내생산 증가 예상, 농수산업에서는 생산액 감소 전망

- (제조업)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은 약 662억원 증가, 수출은 약 2,570만불 증가 예상, 수입은 170만불 증가* 예상

* (수출) 자동차 수출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며 연평균 1,340만불 수출효과 예상(52.1% 비중)
(수입) 연평균 170만불, 수입창출효과는 미미(한-아세안에서 이미 대다수 관세 철폐)하며, 섬유에서 4.9% 수입창출효과 발생 전망

- (농업) 바나나 수입증가* 영향으로 농업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약 95억원 감소** 예상되나,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대

* 바나나 관세양허(30%, 5년 철폐)로 수입량은 15년간 연평균 3천톤 증가로 추정

** 주요품목은 15년 연평균 사과 25억, 복숭아 16억 등 생산감소 예상

- (수산업) 어류, 연체동물 등의 수입증가로 15년간 연평균 수산업 생산액은 1천만원 감소 예상

* 부류별로 연체동물이 15년 연평균 5백만원, 갑각류가 2백만원 감소 예상

【참고자료 3】 한-필리핀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 계획

1 추진경과

- 한국-필리핀 FTA 타결 선언('21.10)에 따라 한-필리핀 FTA 체결 이후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 실시*

* (연구기관/연구기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기간) '22.7.~11.

-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보완대책 수립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시 첨부(통상조약법 제13조)

(통상조약법 제13조)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영향평가결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법률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 결과

- (거시효과)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라 장기(15년간) ①실질 GDP 0.01% 증가 ②소비자 후생 1.6억불 개선 예상

- (고용) 발효 이후 15년간 전체 취업자수가 1,540명 증가 예상

- (세수) 발효 이후 10년간 평균 422.3억원* 세수 감소 예상

* 관세수입은 연평균 610.2억 감소,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연평균 187.9억 증가

- (산업영향) 한-필리핀 FTA로 제조업 중심 수출생산 확대 기대

- (제조업)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국내생산이 662억원 증가, 수출 2,570만불 증가, 수입 170만불 증가* 예상

* (수출) 자동차 수출 증가로 연평균 1,340만불 수출 증가 예상(조선업 대비 52.1%)
(수입) 석유 수입 증가로 연평균 110만불 수입 증가 예상(조선업 대비 64.7%, 한-아세안 FTA 등으로 이미 대다수 품목의 관세 철폐되어 수입 증가 미미)

- (농업)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국내생산이 **95억원*** 감소
 - 바나나 수입 증가로 과실 분야 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기준 **77억원*** 감소, 과채 분야는 **17억원** 감소 예상
 - * 바나나 관세양허(30%, 5년철폐)로 연평균 사과 25억, 복숭아 16억 등 생산 감소 예상
- (수산업)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수산물 수입만 **2.4만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1,022만원*** 감소 예상
 - * 15년간 연평균 연체동물이 522만원(51.1%), 갑각류가 268만원(26.2%) 생산 감소 예상

실질 GDP (15년 누적)	소비자 후생 (15년 누적)	생산효과(15년 연평균)			고용효과 (15년 누적)	세수증감 (10년평균)
		제조업	농업	수산업		
0.01%	1.6억불	537억원	△95억원	△1천만원	1,540명	△422.3억원

3 국내보완대책

- 한-필 FTA는 농업분야에서 발효후 **15년간 1,426억원**(연평균 95억)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 보완대책 마련
 - 다만, 수산업분야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 추진중인 보완대책을 통해 어가 지원
- 농업분야는 원예품목 대상 10년 간 투·융자 **1,469억원** 확대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단지화에 집중, 생산·유통 스마트화를 위한 기존·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추진
- 발효 이후, 한-필리핀 FTA 활용 지원 설명회,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한-필리핀 FTA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